

第25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2004年12月29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

1.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2.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關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3. 辯護士法中改正法律案
4.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5.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6.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7.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8.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9. 酒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10.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案
11.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
12.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13.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14.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
16. 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1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18.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9.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代案)
20.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21. 國債法中改正法律案
22.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
23.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24. 國有財產法中改正法律案
25. 統一教育支援法中改正法律案
26. 自然災害對策法改正法律案(代案)
27.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
28. 일제강점하친일만민족행위진상규명에關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29.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30. 韓國精神文化研究院育成法中改正法律案
31.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32. 地方教育自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33.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3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35.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36.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37.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
38.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39.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代案)
40.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41.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
4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
43. 국어기본법안
44.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
45.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代案)
4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7. 藥事法中改正法律案
48.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49. 社會保障基本法中改正法律案
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5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5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5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
54.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55. 貨物流通促進法中改正法律案
56.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57.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58.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의탐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59.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60.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
61.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5건)

附議된案件

1.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
2.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강제섭 · 김기현 · 김석준 · 김영춘 · 김정부 · 김태환 · 김형주 · 노웅래 · 노현송 · 박명광 · 선병렬 · 신국환 · 심재철 · 안상수 · 엄호성 · 유시민 · 이광철 · 이상락 · 이영호 · 이재오 · 이재창 · 이혜훈 · 전재희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성호 · 최철국 · 허태열 · 황우여 의원 발의) 4
3. 辯護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
4.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5.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
6.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7. 租稅特別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
8.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9. 酒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8
10.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 · 김정부 · 김양수 · 윤건영 · 이혜훈 · 최경환 · 김애실 · 이종구 · 박병석 · 우제창 · 박세일 · 김종률 · 한병도 · 서병수 의원 발의) 18

11.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송영길 · 정덕구 · 엄호성 · 우제창 · 염동연 · 이상경 · 김영춘 · 김희선 · 김진표 · 오제세 의원 발의)	18
12.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 · 권경석 · 김애실 · 김양수 · 김효석 · 엄호성 · 윤건영 · 이재웅 · 이혜훈 · 최경환 의원 발의)	18
13.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9
14.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 · 김홍일 · 엄호성 · 최인기 · 손봉숙 · 신국환 · 이상열 · 심상정 · 이정일 · 이낙연 · 송영길 · 박영선 · 이계안 · 정덕구 의원 발의)	19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 · 한화갑 · 황우여 · 유정복 · 홍창선 · 김재운 · 오제세 · 류근찬 · 김원용 · 김덕규 · 송영길 · 신국환 · 박영선 · 오시덕 · 김태년 · 신중식 · 이계안 · 김정부 · 정덕구 의원 발의)	20
16. 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1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1
18.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19.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3
20.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3
21. 國債法中改正法律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 · 김명자 · 김정부 · 강봉균 · 박영선 · 신국환 · 신중식 · 심재덕 · 안민석 · 우제창 · 우제항 · 유필우 · 이계안 · 이기우 · 이상민 · 이종구 · 장영달 · 정두언 · 조정식 의원 발의)	24
22.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노현송 · 심재덕 · 김기석 · 우윤근 · 한명숙 · 노영민 · 문희상 · 서갑원 · 김원용 · 임채정 · 유재건 의원 발의)	24
23.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24. 國有財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25. 統一教育支援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5
26. 自然災害對策法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6
27.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6
28.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7
29.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7
30. 韓國精神文化研究院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31.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32.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33.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3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35. 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36.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32
37.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박재완 · 박순자 · 황우여 · 김애실 · 정중복 · 권영세 · 김희정 · 이인기 · 이성권 · 진영 의원 발의)	32
38.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32
39.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33
40.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33
41.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 · 유정복 · 박성범 · 류근찬 · 노웅래 · 심재철 · 김석준 · 맹형규 · 김맹곤 · 이재오 · 박세환 · 안상수 · 이해봉 · 선병렬 · 김영덕 · 김충환 · 심재덕 · 황우여 · 최인기 · 강혜숙 · 구노희 · 박진 · 박재완 · 김태환 · 강재섭 · 김기현 · 손봉숙 · 이계창 · 안택수 · 정성호 · 노현송 · 이인기 · 이영호 · 신국환 · 윤건영 · 김영숙 · 이시중 의원 발의)	34

4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김재홍·강혜숙·김원웅·김태년·김영춘·박홍수·노현송·안민석·최규성·원혜영·백원우·이광철·김재윤·이목희·이인영·장영달·이경숙·양형일·현애자·천영세 의원 발의)	34
43. 국어기본법안(정부 제출)	34
44.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45.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4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박성범 의원 외 26인 발의)	36
47. 藥事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안홍준·박찬숙·이재오·고흥길·심재엽·이군현·정두언·주호영·고경화·김영숙·진수희 의원 발의)	36
48.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장향숙·문학진·김태홍·서병수·윤호중·최규식·장복심·이상열·박상돈·정화원·김영춘·강혜숙·이미경·김원웅 의원 발의)	37
49. 社會保障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7
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정부 제출)	39
5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양형일·정장선·김태홍·강기정·이종걸·노영민·박상돈·김맹곤·이상경·우제항·김기석 의원 발의)	41
5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1
5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1
54.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2
55. 貨物流通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2
56.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43
57.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43
58.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의탐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44
59.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44
60.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문석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45
61.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5건)(국회운영·정무·재정경제·보건복지·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6
o 의원신상발언	46

(15시18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강재섭·김기현·김석준·김영춘·김정부·김태환·

김형주·노용래·노현송·박명광·선병렬·신국환·심재철·안상수·엄호성·유시민·이광철·이상락·이영호·이재오·이재창·이혜훈·전재희·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성호·최철국·허태열·황우여 의원 발의)

3. 辯護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최재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갑 출신 최재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해 오던 철도공안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보호처분 불이행 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은,

첫째,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을 새로운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의 하나로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둘째,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공증인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와 관련한 규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하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기로 했습니다.

셋째,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의 하나로 도입하려는 변호사법인의 명칭을 법무법인(유한)으로 하고 변호사조합을 법무조합으로 각각 개칭하였습니다.

넷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되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키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가입을 강제하는 내

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특례에 맞추어 법무조합도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첫째,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채무자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은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채무자가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하는 것은 현행처럼 일률적으로 근로자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의 채무변제의 충당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그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절차를 간이화한 점은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이 많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내용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압류취소신청기간을 본안의 소를 5년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자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辯護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

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6인, 기권 10인으로서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집행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9인, 기권 3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중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7.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3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항 소득세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법인세법 중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

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특별세법 중 개정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강봉균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의 강봉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득세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중 개정 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 각 1건, 그리고 관련 청원 1건 등 도합 3건의 의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내용을 대안으로 수용하여 통합하였습니다.

첫째, 소득세율 인하 여부와 인하할 경우에 몇%를 인하할 것인지를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토론을 한 결과 현재 침체 국면에 있는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인하폭은 세수감소 효과와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소득세 공제 대상의 확대와 공제금액의 상향 조정 여부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자 표준공제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개인단위과세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중도매도자를 포함하고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률을 현행 19%에서 15%로 4%포인트 인하하였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산출 시에 국외 금융

소득을 합산하는 등 현행 소득세법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정부안의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 투자목적회사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준 초과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도한 금융차입 의존을 억제할 목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내국 법인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취지를 일부 도입하는 개정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외에도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부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이 19건 그리고 정부 제출 법안이 1건 등 도합 20건을 통합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내용을 대안으로 수용 통합하였습니다.

첫째,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그동안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과세가 가능했으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로 과세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실효성 있게 뒷받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은 이 법 시행 후의 정치자금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로 투기 지정지역 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한편 법 시행 후 신고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용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현실화했습니다.

셋째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자경 요건 중에 현행법에는 계속하여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산하여 8년으로 완화해서 선의의 피해농민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인하된 법인세율이 2005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저한세율을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000억 원을 기준으로 13%와 1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하는 운송업체들에 대한 세액공제는 화주와 지입차주 등의 화물운송 중간단계의 간접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여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입주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업도시는 수도권 이외의 낙후된 지역에 기업들이 자기생산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근무할 근로자와 직원을 위한 생활 여건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도시에 기업도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상의 유인책이 없을 때는 이 기업도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째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공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5년 말까지 면제기한을 각각 1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아홉째로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는 앞으로 2년간 연장하여 2007년 6월 말까지는 100% 감면하고 2007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75%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째로 현재 부칙에 있는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제도를 본칙에 신설

하고 동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감면세액 자산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며,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를 법에 명시하고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를 선진국들의 예를 감안하여 우리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세금지급 납세담보 제공규정을 신설하며, 일반과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5%에서 14%로 1%포인트 인하함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법상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도 현행의 15%에서 14%로 1%포인트 인하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드리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재정경제위원장)
-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재정경제위원장)
-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효석 의원 새천년민주당의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의 김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중 소득세 1% 인하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니 소득세를 1% 내리서 소비도 살려 보고 경제를 살려 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금을 내리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소득세를 1% 내리면 약 1조 4000억 정도의 세수감이 생깁니다. 그만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 인하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0%는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1% 인하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혀 인하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굳이 따진다면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은 6조 8000억의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 소위에서 재정지출의 삭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재정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살림을 하는 이런 형편에서 만약에 소득세를 1% 내리게 되면 그만큼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소득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소득세를 내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정책입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정책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대단히 소중한 가

칩니다. 우리가 IMF 위기 시에 그런대로 빨리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우리 재정이 건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수치만을 비교하면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낫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적자금 2조 원의 돈을 우리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놓여준 부채의 문제도 잠재요인입니다. 사회보장 지출이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잠재 성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비상시,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통일과 같은 그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대단히 튼튼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독일은 매년 GDP의 3% 이상의 적자 또 국가부채가 7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튼튼한 경제를 가진 나라도 준비되지 않은 통일, 독일이 통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된 준비되지 않은 통일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재정을 건실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자체는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의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이렇게 늘려 가는 것은 재정 운용상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이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세금을 건드리는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26%

정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8%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세를 감세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번 내린 세금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재정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소득세의 1% 인하는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또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당론에 관계없이 충분히 판단하셔서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종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데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효석 의원께서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포인트 소득세 인하하는 것이 서민 사회,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고 가진 자만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도 주셨는데 일부분 오해가 있고 또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크게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환율의 변동성 증대 등 해외 경제 여건은 가변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수출은 규모 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내적 여건을 살펴보면 내수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건설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소비는 지난 1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서 회복세로 돌아

서겠지만 회복 속도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에 달려 있어서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설비투자는 수출 둔화, IT경기 위축 등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 곤란하면서 또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감소세가 지속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위축세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하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금융 부문은 금융 국제화, 시장자금의 부동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정책적 유효성이 저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달러화 약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재정은, 아까 재정 건전성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습지만, 비록 경기 진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 수단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누적되고 있어서 경기 확장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의 힘을 모으고 부담을 나누어 지는 정책 조합, 즉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접근방식이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라고 볼 것입니다. 특히 재정 지출과 감세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라는 감세정책만으로 당장 소비나 투자 등 경기 부양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의 근로·사업 의욕을 고취하고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시장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세법개정안(대안)에 포함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재정지출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조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조합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대한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

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출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소득세법개정안(대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며칠 전 대구에서 네 살배기 아이가 굶어 죽는 기가 막힌 현실을 접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지 빈곤계층을 위한 지원행정 체계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산 제약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밝혔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는 무슨 재정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적자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적자에 대한 우려, 복지 확대 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은 경쟁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토론하고자 하는 이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전혀 없고, 그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되어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전형적인 반민생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의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에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득세율을 인하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진단입니다. 아니,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번 개정안의 세금 감면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자영업자 50%, 근로소득자 47%는 소득세 한 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을 아무리 인하해도 이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또 소득세율 인하 대상인 나머지 50%의 과세자의 경우에도 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입니다.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50% 중 그 상위 10%에게 돌아가는 세제 감면액은 전체 중 43%나 되고, 하위 10%가 가져가는 세 감면액은 0.4%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 감면의 60%를 가져가고, 하위 10%는 세 감면액의 0.2%의 혜택만을 입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머지 50%는 단 한 푼의 세 감면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소득세를 인하하면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병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극도로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감세로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 봤자 그것은 그들만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좋아진다는 궤변도 있습니다마는, 부자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층은 충분히 소비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를 벗어나려면 돈이 없어 생필품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그런 정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감세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감세로 인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감세의 빛잔치가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당분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고통은 오롯이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감세의 빛잔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감세의 포퓰리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해 1조 4000억원의 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1000만 원 미만의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3조 원 정도의 자

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자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결식아동이 30만이 넘고 있습니다. 밥을 굶는 어린이들에게 1년 내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1조 4000억을 원하지도 않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밥 굶는 어린이와 카드 빚 때문에 자살을 고민하는 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의원님께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52인, 기권 13인으로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잠깐만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6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계동 의원 외 4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議員**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LPG 특소세 폐지 법안입니다. 택시 LPG의 특소세를 폐지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소세라고 하는 것은 사치성 물품, 즉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그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준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택시의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내 어디를 가셔도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의 스티커를 접했을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운수사업 종사자들의 1년 평균 임금이 20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택시만큼은 944만 원으로 월평균 77만 원으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험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모든 택시들이 정말 간절하게 LPG 특소세를 좀 폐지해 달라고 총파업을 하면서, 정말 질서 있게 파업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상신운수의 이상기라는 택시기사가 청와대 앞에서 시너를 붓고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택시기사들 얘기가 LG카드에서 420만 원, 또 한 군데에서의 카드 5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분신자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인택시의 3분의 1이 다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LG카드의 빚 독촉에 몰려서, 정말 집에 갔더니 10살 먹은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420만 원 차압을 붙이니까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흥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월 77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은 정말 인간으로서 도회지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돈입니다.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는 LPG 특소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2400억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택시나 버스나 연안여객선, 화물트럭 등등도 전부 다 요구하면 2조 100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88만 원 소득액자하고 월 77만 원 소득액자하고 같습니까? 그 전체를 정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마련입

니다. 그래서 택시 LPG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7800억의 확대 예산도 편성하는데 그 2400억을 못 깎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0만 택시기사들과 100만 택시 가족들은 오늘 이 자리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든 어디 가든 제발 살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여기 장영달 의원님도 택시를 해 보셔서 잘 아시는 분이시고 송영길 의원님도 택시노조 조합장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우리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설교통부와 재정부에서 전국 택시노조연맹과 그다음에 민주노동에 속하는 택시연맹, 개인택시연맹과 얘기했습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부존재했습니다. 그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된 것처럼 이렇게 재정경제부에서 전달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은 안 된다, 보조금 방법이 맞다고 그러지만 11개 품목들, 이를테면 골프용품이라든지 프로젝트TV라든지 이런 것은 세금을 다 면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택시한테는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향후 개선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택시총량제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총량제 규제라는 것은 개인택시 1대를 정부가 5000만 원씩, 법인택시 3000만 원씩 사 가지고 없애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총량을 규제해서 해 주겠다는, 다급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액관리제로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액관리제 3년 전부터 해 왔지만 그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도 그럴듯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입법권을 가진 의원님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 대안으로서 LPG 특소세 폐지 법안을 함께 포함해서 LPG 특소세가 폐지되도록 도와 달라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정말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당리당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修正案(박계동 의원 외 42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이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양산 출신 김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보통의 직장인들은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은 우리 서민 경제의 단면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선택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택시 근로자들은 현 상태로는 더 이상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시 운전은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운수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8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택시에 고용된 택시 노동자의 연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4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월평균 급여 77만 원으로 4인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5만 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도 높

은 노동에 의해 제공받는 급여가 최저생계비보다도 부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인택시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유류비, 세차비 등 월 20만 원 이상을 택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 근로자는 1인당 월평균 3만 3000원을 LPG 특소세로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로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택시 근로자의 이직률은 무려 40%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업계를 비롯한 정치권이 LPG 특소세 감면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가보조금 3년간 연장 지급 그리고 운수업계 전반에 걸친 경영 개선방안 수립이라는 미봉책을 내세우며 택시업계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3년 연장만으로는 바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택시업계의 완전 합의는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계와 합의를 했다면서 정치권은 물론이요, 택시업계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택시 연료인 LPG 특소세 면제에 대한 많은 논란을 거듭한 결과 4 대 4 가부 동수로 안타깝게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택시는 국민의 발이며 서민 경제를 보여 주는 사회의 척도입니다. 택시업계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LPG 특소세 감면은 필수적이며 택시 근로자들이 먹고살아야 서민들도 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이 수정 제안한 것처럼 정말 당리당락을 떠나 열린 마음으로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감면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정덕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정덕구 의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과 김양수 의원님의 감
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절절한 제안설명을 잘 들
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
시용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안에 대
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
다.

저는 그동안 극심한 내수경기의 침체 속에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택시업계의 상황과 구조
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고심하여 왔고, 제가 행정부
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이 문제에 대해
서 항상 애처롭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택시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이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
이 필요하다는 데 절실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동 법안, 그리고
존경하는 선병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관련 법
안을 같이 상정해서 아주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택시업계의 당
면한 문제를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만 가지고 근
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그 효과
가 극히 제한적인, 아주 단기적인 세금 감면 가
지고 과연 복잡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
조적인 택시업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
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뇌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택시업계와 합의해서 별도의 경
영 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금 몇 푼 깎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의 문제를 얼마나 해
소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표가 될
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 지
속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재
정경제위원회는 주목하였습니다.

그 종합대책의 골격은 유지 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조세 지원과 함께 에너지 가격 체계의 조
정, 택시 수급 불균형 개선 대책 마련, 유류비를
전액 회사 부담제로 하는 제도의 도입 등 중요한
제도 개선 대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택
시업계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
용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향후 3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유가보
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는 현재 택시업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동차의 보급 확대, 버스 지하철 등 대
중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택시의 수요는 감
소하고 있는 데 반해서 택시의 공급 대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게 된 결과로 인해서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역별 택
시총량제의 도입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억제함으
로써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겠다 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 이르렀습니다.

셋째는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에 현재 운전기사
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유류비를 회사가 전액 부
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
니다.

넷째로 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
해서 현재 이미 시행 중입니다마는,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세액을 전액 운전기사
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
법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2
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에서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상대가격을 휘발유 대비 60%에서
50% 수준으로 10%포인트 인하되도록, 특별소비
세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이 수정 제안한 내용은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서 택시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
제하자는 것입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들이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바른 국정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와 정책
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정신이 발휘됨으로
써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용 LPG에 대하여는 ㄹ당 195원의 유
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를 면제하
면 회사택시의 경우는 ㄹ당 62원이 인하되고 월
간 유류비 부담이 회사택시 근로자는 1인당 3만
원 정도 경감되는 등 그 효과는 아주 제한적인

데 반해서 택시용 LPG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약 2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현재 심의 중인 2005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고,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도 면세 요구가 확산되게 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연간 약 2조 원가량의 막대한 세수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에너지 세제 개편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는 정부와 택시업계가 합의한 종합대책을 신뢰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17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하나 더 첨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수경기의 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문제는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으면서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심심한 위로와 함께 앞으로 이런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국회가 정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진심 어린 제의를 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조승수 의원입니다.

국회 문 밖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농민·서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의 체감온도는 더더욱 차갑습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과 택시기사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적이 없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마련한 중소기업 구조 전환 토론

회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간부는 오히려 불공정한 하청, 재하청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할 정도로 현재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불과 며칠 전에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4살짜리 아이가 질병과 기아로 죽는 일이 벌어졌으며, 마산에서는 또 한 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고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개혁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무시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회담 야합으로 실종되었습니다. 양당이 이렇게 정치쇼를 하며 국회 운영을 과행으로 몰고 간 결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조세제도개혁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안 등 민생경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벌들에게 토지 수용권과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재벌 특혜법인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 일명 기업도시특별법은 열린우리당에 의해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재벌 특혜법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재경위 대안으로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중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신설조항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당해 구역 내 사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또는 50%, 그다음 2년간 50% 또는 25%를 감면하며, 둘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셋째, 기업도시 내에 소재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기업도시 내에 영리법인 형태의 학교와 병원의 설립을 인정하는 등 도시개발의 공공성과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재벌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기업도시 시행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세제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특혜이며, 재벌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 포기입니다. 과도한 특혜를 준 재벌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한 국가가 나중에 누구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걷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도시특별법의 개발구역 안의 토지 50%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범조계에서도 민간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조항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환수조차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채투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 지역 균형 개발의 공공적 요구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 및 기준, 어느 정도를 초과 개발이익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신속하게 정리되지 않고 장기적인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이익의 환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업도시 건설사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은 도시가 완성된 이후 개발한 토지나 주택 등을 분양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공공기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도시특별법 제19조에 의하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그 지역의 개발이익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개발이익의 조성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며 적절한 수준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너스도 듬뿍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중소기업은 자금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대 재벌은 무려 1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도시 건설은 재벌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돈 쓸 곳을 못 찾아 쌓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보장해 주고 덤으로 각종 특혜를 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정이윤과 방대한 특혜를 보장해 주는 것도 모자라 옥상옥으로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 및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비롯해 방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외에도 이 개정안에 의해 세수 여건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재벌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면서 본사를 대거 기업도시로 이전시킬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830개 대기업이 총 법인세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 재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상당 부분이 기업도시로 이전하여 3년 동안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을 경우 법인 세수에 치명적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수출 증가와 내수 침체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어 대기업은 막대한 세금감

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에 대하여도 세금감면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재벌 해방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재벌에게 이처럼 세금을 감면해 주고 나서 또 무슨 돈으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살리기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도시특별법 자체가 갖는 위헌적 요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논외로 하고라도 종합선물 세트를 마련하는 것도 모자라 금보자기로 포장해 주는 식의 과도한 세제 특혜가 야기할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세수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인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 예를 들면 주식의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의 한시적인 유보나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상향 조정 또한 조세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독소 조항을 담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개발독재 시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결국 오늘의 허약한 우리 경제체제를 구조화시킨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서 모쪼록 기업도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부당한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외 4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10인, 반대 102인, 기권 37인으로서 박계동 의원 외 4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154인, 반대 72인, 기권 26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 안은 농민들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별세를 부과하여 농어촌 지역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세법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낮추는 결과는 농촌 지역의 지원을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봄이 와도 무슨 씨를 심어서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될지 근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는 통상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통상 자리에서 우리 농업 농민들은 언제나 희생 제물이 되어 왔습니다. 기업 하고 수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농촌 지역에 다시 재분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농촌 지역에서는 더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마늘 협상이라든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각종 통상 무역협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갖는 불신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쌀 재협상에서도 농민들이 지금 거리에

서, 농촌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런 특별세는 더 그 세율을 높여서 많은 농촌 지역에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지진으로 일어난 자연재해는 재앙의 수준으로 인류를 덮치고 있습니다. 돈을 갖대질하여 경제중심으로 모든 정책에 일관하고 있는 이런 정치야말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떤 재앙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식량은 생명산업이자 주권산업입니다. 농업을 홀대하고 외면하는 이런 정책은 나중에 어떤 식량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면 그런 농촌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는 거의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특별세 인하 부분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4인, 기권 10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酒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정부·김양수·윤건영·이혜훈·최경환·김애실·이종구·박병석·우제창·박세일·김종률·한병도·서병수 의원 발의)

11.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

표발의)(박영선·송영길·정덕구·엄호성·우제창·염동연·이상경·김영춘·김희선·김진표·오제세 의원 발의)

12.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권경석·김애실·김양수·김효석·엄호성·윤건영·이재용·이혜훈·최경환 의원 발의)

(16시47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9항 주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엄호성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엄호성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부산 사하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주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안택수 의원과 임인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일부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과실주에 대한 세율 30%를 국내 과실의 소비 촉진과 과수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과실주 중 연간 생산량 일정규모 이하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특히 어려운 음식·숙박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공제율을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의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에서 1만 원 이하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부분은 1만 원 이하 상품권이 대부분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과 같이 계속 비과세하기로 하되 1만 원 초과 상품권에 대하여는 현행 일률적으로 400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과 같이 1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200원,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400원의 인지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酒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재정경제위원장)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주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주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15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2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2인으로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4.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홍일·엄호성·최인기·손봉숙·신국환·이상열·심상정·이정일·이낙연·송영길·박영선·이계안·정덕구 의원 발의)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황우여·유정복·홍창선·김재윤·오제세·류근찬·김원웅·김덕규·송영길·신국환·박영선·오시덕·김태년·신중식·이계안·김정부·정덕구 의원 발의)

(16시56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13항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김효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김효석 전라남도 담양·국성 출신 새천년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일부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의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정부 보유 주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되 그 매각시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8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정부 보유 주식을 법정시한인 2005년 3월 27일까지 전량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주식을 서둘러 매각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시한을 2년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매각 범위를 전량 매각에서 지배주주의 지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매각으로 변경하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있을 경우 매각기

한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미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료상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료상을 통한 불법거래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장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즉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는 자료상을 통한 세금포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현행 2억에서 3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중산층의 주택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주택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6인, 기권 6인
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다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7인 중 찬성 207인, 반대 6인, 기권 4인
으로서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안은 재정경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15인, 반대 2인, 기권 1인
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8.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中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17시04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16항 신탁업법중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18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
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
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李鍾九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 강남갑 출신 재정경제위
원회의 이종구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과 국제금
용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
한 심사보고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특정금
용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
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개인
의 종합재산 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신탁회사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탁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을 통해서 수익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해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일괄 수탁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둘째, 신탁회사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에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건
물을 신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토지
의 개발사업별로 사업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금
전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탁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수익자 보호
를 위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주요 내용을 추
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개발신탁의 개별사업별 금전수탁 한
도를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해서 토지
개발신탁사업의 과도한 금전수탁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실화된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의 고유재
산으로 편입하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제출안의 내용이 신탁계정의 부실을 신탁회사 고
유계정의 부실로 전이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신탁재산의 편입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과도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삭
제하고 관련 내용을 직접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

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대안은 김효석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통합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준 금액을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고객 주의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속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해서 동 금융거래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국제청장 등 관계기관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은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에 있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번에 미주개발은행 및 그 부속기구인 미주투자공사와 다자투자자금 등 3개 기관에 신규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국제기구의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되어 전 세계에 걸친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게 되었고, 회원국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연간 90억 불 규모의 차관 조달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과의 협력 강화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8인으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국
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
경제위원장 제출)

**20.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7시15분)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신
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
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의 이계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이계안**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동작을 출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
개정법률안(대안)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존
경하는 김효석 의원과 김희선 의원께서 각각 대
표발의하신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
정하고, 엄호성·심상정 의원께서 공동으로 소개
하신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
무의 범위에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
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는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둘째, 여신 전문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금융
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
규정을 여신 전문 금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셋째, 현재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
대적으로 취약한 여신 전문 금융기관에 대한 경
영 지도 및 감독의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은
행법과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금융 감독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
정법률안(대안)은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과 본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
을 수정하여 통합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현재 신용불량자제도는 일단 신용불량자
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제반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보를 고
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까지 제한되어 신용
회복의 기회까지 박탈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 제
24조제1항제6호 규정에서 “고용”을 삭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고용에 제약이 되지는 않도록 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代案)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代案)

(재정경제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여
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를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國債法中改正法律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김진표·김명자·김정부·강봉균·박영선·신국환·신중식·심재덕·안민석·우제창·우제향·유필우·이계안·이기우·이상민·이종구·장영달·정두언·조정식 의원 발의)

22. 歸屬財産處理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정성호·노현송·심재덕·김기석·우윤근·한명숙·노영민·문희상·서갑원·김원용·임채정·유재건 의원 발의)

23.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21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1항 국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최경환**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의 경산시·청도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채법중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및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4건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채의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에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2년에 불과하여 지급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채 소지자가 이자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채이자 상환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국채의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모두 5년으로 하되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는 3년으로 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귀속재산 매수대금의 분납금을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해지되도록 한 것은 헌법의 요청인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설되는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시 부족분을 일반회계가 부담할 뿐 아니라 통합계정은 17개 회계를 포함하는 큰 계정이므로 동 계정의 자금 운용 상황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법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관리계획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또는 연체료가 체납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에서 직

접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는바,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 잡종재산의 교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잡종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도 잡종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교환요건에 추가하였고,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대하여는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매장물의 귀속절차가 불분명하고 시효문제 등 내용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종전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國債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歸屬財産處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국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20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국채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統一教育支援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31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5항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4년 7월 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상정하여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 제16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원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통일에 관한 국민여론을 통합하고 청소년의 통일 무관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며,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현행 6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통일교육센터는 본 법률안에서 처음으로 규정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시 사전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統一教育支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김덕규 그러면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33인, 기권 6인으로서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自然災害對策法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7.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시35분)

○부위원장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유기준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의 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대비와 대응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연초에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하고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해 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체계적인 복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기 전에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및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방방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및 홍수피해예상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풍으로 인

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내풍설계기준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일괄 입찰방식으로 발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주변의 보도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엇그저께 동·서남 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어났던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상 유례없는 실로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크고작은 태풍과 해일, 그리고 폭우 등으로 말미암아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경험하고 있는바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재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되어 효과적인 방재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크나큰 진척이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직위 지정 시 현행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개방형직위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게 병역 또는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自然災害對策法改正法律案(代案)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일제강점하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9.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시43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8항 일제강점하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법률안(대안)과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동행명령제 등의 조사방법을 보완하며,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함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중좌 이상의 장교를 소위 이상의 장교로 하고,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를 중앙 및 지방 조직 간부로 하며, 경찰 등의 경우는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데 적극 앞장선 행위”로 하여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활동 기간에 있어서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 동안 활동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그 출석요구에 불허하는 자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명령에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누구든지 일제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기간 중 행정기관, 군대, 사법부, 조직 등의 특정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하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 제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의 상위법 적합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 사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 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청구기간은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하여 감사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입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및 재의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해서는 박기춘·이인기 의원 외 2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의원 경기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 의결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수정 이유와 수정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하에서 발생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명에서 그 시기를 일제강점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한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서 법제명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반민족행위”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여야 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박기춘·이인기 의원 외 268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이인기 의원 외 268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윤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해 주세요.)

그 결과는 속기록에 게재해서 가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6인, 기권 13인으로서 박기춘·이인기 의원 외 268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韓國精神文化研究院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1.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54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0항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군현** 교육위원회의 이군현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명칭 변경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 연구원이 한국학 연구를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실질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행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인 기관의 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가보훈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 기관장들과의 직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소속 2급, 3급 공무원으로 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도서관 또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韓國精神文化研究院育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8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3.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5.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8시00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2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복기왕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복기왕**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복기왕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현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시·도의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동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사전·사후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교원 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의 규정 중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으로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

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그 명칭이 동 위원회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0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37.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박재완·박순자·황우여·김애실·정종복·권영세·김희정·이인기·이성권·진영 의원 발의)

38.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8시08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6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권선택**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 의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이

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강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법안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두 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하였고,

둘째, 과학기술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에서 특구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구로 지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을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연구개발특구의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과학기술부에 두어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는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연구개발특구 안의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구마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대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위치 정보가 유출 또는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안이 위치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임을 감안하여 그 제명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으로 하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으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명시하였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주체 이외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대안과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2인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를 잘못했습니다.)

잘못 표시가 됐습니까? 정정해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회 제출)

40.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회 제출)

위원장 제출)

41.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유정복·박성범·류근찬·노웅래·심재철·김석준·맹형규·김맹곤·이재오·박세환·안상수·이해봉·선병렬·김영덕·김충환·심재덕·황우여·최인기·강혜숙·구논희·박진·박재완·김태환·강재섭·김기현·손봉숙·이재창·안택수·정성호·노현송·이인기·이영호·신국환·윤건영·김영숙·이시종 의원 발의)

4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김재홍·강혜숙·김원웅·김태년·김영춘·박홍수·노현송·안민석·최규성·원혜영·백원우·이광철·김재윤·이목희·이인영·장영달·이경숙·양형일·현애자·천영세 의원 발의)

43. 국어기본법안(정부 제출)

(18시18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9항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국어기본법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우상호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우상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및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 및 국어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 및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각각의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

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도서문화전용상품권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였고

셋째, 한국 문학의 번역·출판 지원 및 해외 소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정종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각각의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재 관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의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시·도 문화재위원회를 법적 심의기구로 하여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문화재의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적 문화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해외 반출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셋째, 등록문화재의 등록 대상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발굴행위를 막고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 시험제도 개선, 무형문화재제도 개선 등 현행 문화재보존관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행물로 결정한 간행물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및 관보 고시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의의 유통 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라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 사유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당인, 언론인 및 공무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동 개정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원뿐만 아니라 정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까지 포함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의 적용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어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최초로 제정되는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법으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를 거쳐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언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있는 한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나 현재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근간이 한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문서의 표기에 있어서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셋째, 남북한 언어 통일의 필요성이나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언어의 순화에 대하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문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언어가 문화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어문규범에 표준어 발음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

는 국가의 의무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代案)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문화관광위원장)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어기본법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어서 투표해 주시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어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5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국어기본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30분)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광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한광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지역구이며 열린우리당 소속으로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한광원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매

우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재해 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19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박성범 의원 외 26인 발의)

47. 藥事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안명옥·안홍준·박찬숙·이재오·고홍길·심재엽·이근현·정두언·주호영·고경화·김영숙·진수희 의원 발의)

48.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장향숙·문학진·김태홍·서병수·윤호중·최규식·장복심·이상열·박상돈·정화원·김영춘·강혜숙·이미경·김원웅 의원 발의)

49. 社會保障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8시3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문병호**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약사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안명옥 의원, 김영춘 의원, 장복심 의원, 안택수 의원, 정화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동 6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6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

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둘째,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 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제도를 개선하여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직무 수행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넷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식약청장·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식품감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와 위생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위해식품 등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그 식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식중독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식중독 환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영양사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근거를 마련하며,

일곱째,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을 인상하고,

여덟째,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범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법상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비영리 법인에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비영리법인에 한해 조직은행을 운영토록 하려는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 인체조직 기증의 윤리성과 그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인체조직의 수급상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안전 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는 안전 용기·포장 사용을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공단이 보수나 신고 내용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세청장이 공단에 통보하는 내용을 보수와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代案)

(보건복지위원장)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藥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社會保障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보건복지위원장)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문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90인, 만장일치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7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정부 제출)

(18시44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목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이목희 환경노동위원회 이목희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

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사업장별로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퇴직급여의 수익성과 안정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계속 적립되어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의 규약 작성 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특례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용 시기가 유예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보다는 훨씬 진전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이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근로자퇴직급여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지난 시대, 소위 폐쇄사회에서는 어느 부분을 위한다고 했던 정책이 지금처럼 개방화된 사회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의 연장선에서 지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서 퇴직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지급률을 계산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도에 IMF가 있자 이 법을 고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도록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정산액을 중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했던 제안설명의 일부 부분은 틀린 주장입니다.

이 법의 근본 목적은 지금까지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주던 또는 부분적으로 주던 퇴직금을 신탁기관 소위 금융기관에 이것을 모아서 신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장부상으로 처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퇴직이 발생했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매달 또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업은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는 성남에 있는 인력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기업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개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이 격화되어서 그 부분의 부담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까, 투자 여건을 조성해 줄까 이것이 국가적으로 현

재 고민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또는 매달 기업의 부담금, 소위 1400여만 명에 달하는 사람 중에서 퇴직급여 대상자 7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임금, 그것을 12분의 1로 환산하면 약 13조에 달하는 돈을 매달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과연 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가 먼저 기업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적은 근로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퇴직금은 근무한 근속연수에 지급률을 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400만 노동자 중에서 790만 명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아예 퇴직금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결국은 노동자 내에 양극화가 극대화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퇴직산정 시점의 3개월분 임금을 근속기간에 곱해서 줍니다. 많이 받던 사람은 더 많이 받습니다. 비정규직은 아예 퇴직금 혜택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도 비정규직은 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정규직 노동자이거나 농어촌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부에 과연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근본 대책이 있는지 저는 이 점을 되물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조차 낼 수 없는 근로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노후 보장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저는 퇴직금 제도가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3년여 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을 직접 노사가 협상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다수에 의해서 이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기업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

라 노동자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노후 보장이 아니라 결국은 노동자 내에서의 분단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반대합니다.

또한 이것과 똑같은 취지로 현재 국민연금이 130조가 되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다 보니까 97년도 IMF를 맞이해서 국내 경기가 어려웠을 때 약 57조 원의 돈이 풀렸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4년여 동안 노동자들은 살았고 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130조나 되는 이 돈을 뉴딜정책에 쓸 것이냐, 아니냐로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경제가 어려우면 퇴직금 중간 정산처럼 국민에게, 가입자에게 나누어 주면 저는 그것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국민연금을 다시 고쳐 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재벌 총수도 가입하기만 하면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소득이 적은 사람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가입 기간과 소득률에 의해서 이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양극화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 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제도는 그냥 ‘여당이 제출했으니까’, ‘정부가 제출했으니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아시는 것처럼 뉴딜정책은 정부가 실시하기 때문에, 정부를 맡은 책임자나 정치인들은 4년 있으면 그 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어서 투명성이나 부패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개인에게 돌려주어서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의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봐서 저는 퇴직금제도를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17인, 반대 58인, 기권 11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양형일·정장선·김대홍·강기정·이종걸·노영민·박상돈·김맹곤·이상경·우제항·김기석 의원 발의)

5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5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8시58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동철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대지와 건물 가액을 통합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법의 명칭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하고,

둘째, 공시된 표준 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안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중교통육성법안을 심사·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 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통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86인 만장일치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82인 만장일치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5. 貨物流通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9시05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경수 안산 상록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및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제도를 상설 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당초 해제 목적이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200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제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앞으로 훼손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지원하여 전문물류업자로 육성함으로써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영위하는 자 중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종합

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 물류 관련 시설에 우선 입주하게 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貨物流通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장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0인 중 찬성 175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8인 중 찬성 164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57.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비준동의안

**58.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
의탐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
관한협정비준동의안**

**59.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
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
의안**

(19시10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대한
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
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대한민국과일본국
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
58항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의
탐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
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대한민국과요르
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
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성권** 존경하는 의
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를 한나라당 소속의 이성권 의원입니
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동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및상사
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민사 및 상사
상의 사법공조에 필요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국은 민사 및 상사 사건에 있어
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의 실시 등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법공조의
촉탁은 양국의 중앙 당국 간에 직접 실시하되 외
교 경로를 통하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
우에는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
용받는 자에 대하여 그중 어느 한 국가의 사회보
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에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및 관련 기업의 사회보장료 납

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
의탐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
협정비준동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정부 간 우주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에 관
한 협정으로서 양국 정부는 우주소재 연구, 발사
체 개발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
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
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 대상 소득을 부동산 소득, 사업 이윤, 국제운
수 소득 등으로 하고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
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등 대상 소득별 과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
다.

이상 4건의 각 동의안은 2004년 12월 27일 제
251회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
치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및상사사법
공조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의탐
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
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
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심
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
및상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9인, 만장일치로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의탐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넣으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제출받아서 회의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의탐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없고 기권 2

인으로서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

(문석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9시18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문석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문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한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총톤수 10t 미만의 생계형 연안어선인 납시어선에 대해서도 일반 어선과 동일하게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일선박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납시어선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유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납시어선업의 본래 취지가 어한기 또는 휴어기에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납시어선업 영위 시에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뿐더러 영세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로 하여금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6인으로서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5건)

(국회운영·정무·재정경제·보건복지·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9시21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운영·정무·재정경제·보건복지·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다른 열두 군데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이미 채택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채택하지 못한 다섯 군데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5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원신상발언

(19시2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시간입니다. 다음은 열두 분 의원이 신청을 했으나 교섭단체간의 협의와 당해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오늘은 5분자유발언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한 분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번이나 발언대에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긴 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지쳤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민들이 쌀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쌀 협상이 잘못되었다,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많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고 농민단체들이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재협상을 그대로 마무리하려고 연말에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8일째 단식으로써 이 부분을 요구하고, 국회에서 당연히 이런 농민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또 정부에 질책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이자 주권의 문제인 쌀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신상발언과 함께 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체면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정성과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고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조상 고유의 전통사상을 지금까지 지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 이런 우리 전통사상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촌은 60세 이상이 60%가 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많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농사를 지을지, 수지맞는 농사가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나마 전 농민의 76%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 소득의 53%가 쌀농사로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쌀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전의 UR협정에 이어서 이번에 재협상을 했지만 UR협정 때 MMA 물량 4%의 100%에 가까운 99%의 물량을 더 허용했습니다. UR협상 때는 전혀 1%도 허용하지 않았던 밥쌀용 시장유통 쌀을 10%에서 30%까지 6년

이내에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님의 제삿상에도 외국 쌀이 오르게 된 이런 협상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년 후에는 재협상의 여지도 없이 바로 자동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협상 내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협상 내용이라면 우리 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최악의 협상 내용입니다.

하물며 학자들은 관세화 유예가 더 이익이나, 관세화가 더 이익이나 할 정도로 관세화 유예 협상 내용 중에는 최악의 협상 내용이라고 경실련과 142개로 구성된 '쌀지킴이 국민운동본부'에서도 재협상과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일흔여섯분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재협상과 비준 촉구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법부는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견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올해 마지막 하는 이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어머니인 농민을 위한다면 우리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론과 논쟁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빨리 가야.....

마음이 바쁘신데 농업에 대한 충정으로 이렇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순조로운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9인)

찬성의원(22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희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창달	박혁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홍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김문수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29인, 찬성의원 229인임)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7인)

찬성의원(23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홍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인)

홍문표

○辯護士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6인)

찬성의원(22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김교홍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일 박순자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상경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형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6인)

김영선 선병렬 안상수 이덕모
 이은영 조정태

기권의원(10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나경원
 박세환 박영선 유기준 이상민
 이상배 정갑윤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9인)

찬성의원(22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권영세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김명주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김성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김춘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노웅래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박병석	박세일	박순자	박종근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박진	박찬석	박혁규	박형준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서재관	선병렬	송영선	신계륜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이재웅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엄호성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광재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덕모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허태열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덕구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반대의원(9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강기갑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임종인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현애자				지병문	진영	채수찬	천정배
기권의원(3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송영선	이혜훈	정화원		최성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36인)

찬성의원(171인)

강기정 강봉균 고진화 공성진

반대의원(52인)

강기갑 강성종 강혜숙 권철현
김낙성 김동철 김양수 김우남

김재경 김재홍 김종인 김태년
 김효석 노회찬 단병호 박상돈
 박세환 박창달 배일도 복기왕
 손봉숙 심상정 안경률 안홍준
 양형일 유승희 유시민 윤건영
 이균현 이낙연 이방호 이상열
 이영순 이재웅 이정일 이철우
 임종인 장향숙 정두언 정병국
 정장선 조승수 주승용 천영세
 최경환 최순영 최용규 최철국
 한화갑 현애자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3인)

강길부 고경화 김명자 김영춘
 박영선 송영길 이계진 이인영
 임종석 정봉주 정화원 진수희
 최연희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한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세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8인)

강기갑 김양수 김영선 김종인
 노회찬 단병호 박세환 배일도
 심상정 윤건영 이영순 임종인
 조승수 주호영 천영세 최경환
 최순영 현애자

기권의원(1인)

진수희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6인)

찬성의원(21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일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석 박찬석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修正案**

투표의원(249인)

찬성의원(110인)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김문수 김석준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근혜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배일도 서병수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엄호성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10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구논회
 김낙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부겸 김성곤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재관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병엽
 안영근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시중 이윤희
 이은영 이종걸 이철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청래 정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최홍
 홍재형 홍창선

기권의원(37인)

강기갑 강성종 강창일 권선택
 김교홍 김덕규 김영주 김태홍
 김한길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학진 박병석 복기왕 서갑원
 선병렬 송영길 심상정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유기홍 윤원호
 이근식 이상민 이영순 이원영
 이인영 임종석 정장선 조경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최인기
 현애자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52인)

찬성의원(15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찬석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광 재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덕 모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열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혜 훈 임 종 석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반대의원(72인)

강 기 갑 고 경 화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철 현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희 정
 나 경 원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진 박 창 달
 박 형 준 배 일 도 선 병 렬 손 봉 숙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경 료 안 상 수
 안 홍 준 엄 호 성 원 희 룡 윤 건 영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성 권 이 영 순
 이 윤 성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정 일
 이 종 구 이 해 봉 임 인 배 임 중 인
 임 태 희 장 윤 석 전 여 옥 정 갑 윤
 정 종 복 정 화 원 조 승 수 주 호 영
 진 영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규 식
 최 순 영 최 인 기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현 애 자 홍 준 표 황 우 여

기권의원(26인)

강 성 종 고 진 화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기 현 김 덕 규 김 재 경 김 형 오
 김 효 석 남 경 필 박 근 혜 박 찬 숙
 박 혁 규 서 병 수 송 영 길 송 영 선
 양 승 조 이 낙 연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인 기 이 한 구 정 병 국 정 봉 주
 최 구 식 최 연 희

투표의원(212인)

찬성의원(16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문 수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용 김 재 경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회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형 준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국 환 신 기 남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두 언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 영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환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34인)

강 기 갑 강 혜 숙 고 진 화 김 낙 성
 김 양 수 김 재 윤 김 재 홍 김 효 석
 노 회 찬 단 병 호 박 세 환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홍 수 배 일 도 손 봉 숙
 심 상 정 안 민 석 유 승 회 윤 원 호
 이 경 숙 이 영 순 이 철 우 이 혜 훈
 임 중 인 정 문 현 정 장 선 정 화 원
 조 승 수 천 영 세 최 구 식 최 순 영
 최 인 기 현 애 자

기권의원(10인)

김 종 료 김 학 송 박 혁 규 복 기 왕
 안 병 엽 양 형 일 이 인 영 이 주 호
 전 재 희 정 갑 윤

○酒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16인)

찬성의원(21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공 성 진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훈 김 종 료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홍 수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의원(1인)

조 경 태

기권의원(1인)

김 중 인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2인)

찬성의원(21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공 성 진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훈 김 종 료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현	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연	정몽준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3인)

강기갑 단병호 조승수

기권의원(4인)

심상정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1인)

찬성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화 영 이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의원(1인)

이 덕 모

기권의원(3인)

이 해 훈 정 갑 윤 정 몽 준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4인)

찬성의원(22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공 성 진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흥 수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2인)

김 종 료 정 갑 윤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15인)

찬성의원(20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공 성 진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김명자 김명주 김김무성 김문수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반대의원(6인)**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광원 김영덕 안홍준 이상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해봉 최경환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기권의원(6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영선 김태환 송영선 정갑윤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화원 한선교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영선 박진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시중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화갑

김태열 김명자 김명주 김석준 김영주 김재원 김종률 김충환 김한길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김태홍 김현미 김희정 김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진 문희석 박명광 박영선 박진진 박혁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양승조 오시덕 우원식 유기준 유승희 윤원호 이경재 이계경 이광재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7인)

찬성의원(20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영선 박진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근식 이목희 이상민 이용희
 이인영 이인영 이철우 이철우
 임종석 임종석 장윤석 장윤석
 전재희 전재희 정봉주 정봉주
 정장선 조경태 조경태 주승용
 최영세 최구식 최연희 최철국
 최철국 한화갑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6인)

김영선 김태환 안홍준 이덕모
 이상배 정갑윤

기권의원(4인)

권철현 김용갑 안상수 이규택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채수찬 조승수 주승용 지병문
 최규식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용규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2인)

안홍준 정갑윤

(김무성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엄호성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19인, 찬성의원 217인, 기권의원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19인)

찬성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7인)

찬성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

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18인)

찬성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중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화 갑 허 태 열 현 애 자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의원(18인)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명 주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재 원
 김 태 환 김 효 석 박 형 준 손 봉 숙
 안 흥 준 원 희 룡 이 상 배 이 상 열
 정 중 복 한 선 교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김 주 김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희 정 김 나 경 원 김 남 경 필 김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준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흥 수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중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연 회 최 병 국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태 열 현 애 자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유 정 복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1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공 성 진 구 논 회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훈 김 중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1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공 성 진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홍 수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정 화 원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0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공 성 진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홍 수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창 유 기 흥 유 정 복 윤 호 중 이 계 경 이 균 현 이 낙 연 이 상 경 이 석 현 이 원 영 이 인 영 이 철 우 임 종 인 전 병 현 정 두 언 정 의 화 정 화 원 조 성 래 채 수 찬 최 규 성 최 순 영 최 재 성 한 선 교 홍 재 형 황 진 하	우 제 항 유 선 호 유 필 우 이 강 래 이 계 안 이 규 택 이 명 규 이 상 득 이 시 중 이 윤 성 이 종 결 이 혜 훈 장 경 수 전 여 옥 정 문 현 정 장 선 제 종 길 조 정 식 천 영 세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철 국 한 화 갑 홍 준 표	원 혜 영 유 승 회 윤 건 영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근 식 이 목 회 이 상 민 이 영 순 이 은 영 이 종 구 이 화 영 장 북 심 전 재 회 정 성 호 정 종 복 조 경 태 주 승 용 최 경 환 최 병 국 최 용 규 한 명 숙 허 태 열 홍 창 선	원 희 룡 유 재 건 윤 원 호 이 경 재 이 광 재 이 기 우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용 회 이 인 기 이 주 호 임 인 배 장 향 숙 정 갑 윤 정 의 용 정 청 래 조 배 숙 지 병 문 최 구 식 최 성 최 인 기 한 병 도 현 애 자 황 우 여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희 정 노 응 래 문 병 호 박 기 춘 박 순 자 박 찬 석 박 형 준 배 일 도 서 갑 원 손 봉 숙 신 학 용 심 재 철 양 승 조 오 영 식 우 윤 근 원 희 룡 유 승 회 윤 건 영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규 택 이 덕 모 이 상 경 이 석 현 이 윤 성 이 종 결 이 호 응 장 경 수 전 여 옥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종 복 조 배 숙 지 병 문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용 규 최 철 국 한 선 교 홍 준 표	김 한 길 김 형 주 나 경 원 노 현 송 문 석 호 박 명 광 박 영 선 박 찬 숙 박 홍 수 백 원 우 서 병 수 송 영 선 심 상 정 안 경 료 안 상 수 양 형 일 오 제 세 우 제 창 유 기 준 유 재 건 윤 원 호 이 경 재 이 광 재 이 근 식 이 명 규 이 상 득 이 시 중 이 은 영 이 종 구 이 화 영 장 윤 석 전 재 회 정 의 용 정 청 래 조 성 래 진 수 회 최 경 환 최 성 최 인 기 한 광 원 허 태 열 홍 창 선	김 혁 규 김 효 석 남 경 필 노 회 찬 문 학 진 박 병 석 박 종 근 박 창 달 박 회 태 변 재 일 서 재 관 신 계 료 심 재 덕 안 명 옥 안 영 근 엄 호 성 우 상 호 우 제 항 유 기 흥 유 정 복 윤 호 중 이 계 경 이 광 철 이 기 우 이 목 회 이 상 민 이 용 회 이 인 기 이 주 호 임 인 배 장 향 숙 정 갑 윤 정 병 국 제 종 길 조 정 식 채 수 찬 최 규 성 최 순 영 최 재 성 한 명 숙 현 애 자 황 우 여	김 현 미 김 회 선 노 영 민 단 병 호 문 회 상 박 상 돈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복 기 왕 선 병 렬 신 기 남 심 재 업 안 민 석 안 흥 준 염 동 연 우 원 식 원 혜 영 유 선 호 유 필 우 이 강 래 이 계 안 이 균 현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원 영 이 인 영 이 철 우 임 종 인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봉 주 정 장 선 조 경 태 주 승 용 천 영 세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재 천 한 병 도 홍 재 형 황 진 하
---	--	--	--	--	--	--	--

반대의원(4인)

김 기 춘 유 기 준 이 덕 모 이 해 봉

기권의원(2인)

김 기 현 이 상 열

○國債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20인)

강 기 갑 강 창 일 공 성 진 권 영 세 김 교 흥 김 낙 순 김 명 주 김 석 준 김 영 덕 김 용 갑 김 재 흥 김 춘 진	강 기 정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오 을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무 성 김 성 곤 김 영 숙 김 원 웅 김 정 훈 김 충 환	강 길 부 고 경 화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문 수 김 애 실 김 영 주 김 재 경 김 종 인 김 태 흥	강 봉 균 고 진 화 권 영 길 김 광 원 김 낙 성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양 수 김 영 춘 김 재 윤 김 진 표 김 태 환
--	--	--	--

○歸屬財産處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3인)

찬성의원(22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인)

김명주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26인)

찬성의원(22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안영근	안홍준	안양승조	안양형	김태홍	김태환	김송오	김한길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김효석	나경원	김필찬	노영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박기춘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박순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박찬석	박영선	박종근	박진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박형준	박찬숙	박희태	박기선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배일도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시종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송영길	심재덕	심기남	신학용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이용희	이원영	이석현	이시종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인기	이인영	이윤성	이은영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이주호	이철우	이종걸	이종구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화영	임인배	이혜훈	이호웅
황우여	황진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장경수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1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김태홍	김태환	김송오	김한길
공성진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효석	나경원	김필찬	노영민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박기춘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박순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박찬석	박영선	박종근	박진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박형준	박찬숙	박희태	박기선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배일도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심재덕	심기남	신학용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용희	이원영	이석현	이시종
				이인기	이인영	이윤성	이은영
				이주호	이철우	이종걸	이종구
				이화영	임인배	이혜훈	이호웅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장경수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전병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덕구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봉주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정장선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조경태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주승용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진영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경환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병국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용규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최철국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한선교
				황우여	황진하		홍준표

기권의원(2인)

박세환 송영선

○統一教育支援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8인)

찬성의원(17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창달	박혁규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반대의원(33인)

고경화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무성	김영덕	김용갑
김태환	나경원	박세환	박순자
박종근	배일도	송영선	안명옥
안홍준	엄호성	윤건영	이계경
이계진	이규택	이상득	이상배
이종구	이주호	이혜훈	전여옥
정문헌	정의화	정종복	최구식
한선교			

기권의원(6인)

김애실	박찬숙	박형준	손봉숙
전재희	황우여		

○自然災害對策法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13인)

찬성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재홍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시덕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주호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이광철	이군현	이덕모	이근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기우	이낙연	이상득	이명규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이병석	이상경	이영순	이상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이성권	이시종	이은영	이용희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이원영	이윤성	이주호	이인기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이인영	이종걸	이화영	이철우

기권의원(1인)

김명주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13인)

찬성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덕모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상득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영순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주호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화영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의원(1인)

김기춘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227인)

찬성의원(166인)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주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혁규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홍준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은영
이인기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반대의원(49인)

강기갑	강기정	고경화	공성진
곽성문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무성	김용갑	김재홍	김충환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박찬숙
박창달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심상정	양승조	유승희	유정복
윤건영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철	이덕모	이상경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철우
임종인	장윤석	전재희	정종복
천영세	최경환	최규식	최순영
현애자			

기권의원(12인)

강길부	권철현	김덕규	김재경
김한길	박영선	박형준	박희태
오영식	정갑윤	지병문	최용규

(이윤성 의원 버튼 미조작. 김충환·박찬숙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재석의원 227인, 찬성의원 166인, 반대의원 49인, 기권의원 12인임)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0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진화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2인)

곽성문 김명주

기권의원(4인)

박혁규 심재철 엄호성 이종구
 (김재홍·이경숙·최규식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11인, 찬성의원 205인임)

투표의원(205인)

찬성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고경화
 고진화곽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덕모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원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8인)

김광원 김영덕 김충환 박찬숙
 안홍준 이상배 정갑윤 한선교

기권의원(1인)

이해봉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상경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혜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세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1인)

조성래

기권의원(1인)

김형주

(최규식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05인, 찬성의원 203인임)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5인)

찬성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고경화
 고진화 광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반대의원(1인)

조성래

기권의원(1인)

김형주

(최규식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05인, 찬성의원 203인임)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6인)

찬성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곽성문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창달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엄호성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노현송	노회찬	맹형규	문병호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이규택	이근식	이덕모	이명규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이주호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전재희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반대의원(20인)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김광원	김영덕	김태환	김학송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맹형규	박찬숙	안홍준	양형일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윤건영	이상배	이윤성	이종구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전여옥	정갑윤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주호영	최경환	한선교	허태열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기권의원(2인)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김애실	송영선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7인)

찬성의원(20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광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반대의원(1인)

윤건영

기권의원(1인)

김명주

○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9인)

찬성의원(20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광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노응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덕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이상경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이주호 이철우 이혜봉 이혜훈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이근식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이상민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종걸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봉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장복심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조경태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진수희 채수찬 최구식 최연희 최철국 최재천 최철국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최재천 최철국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1인)

김명주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8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광성문 구논희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봉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진수희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12인)

강기갑 권영길 김기현 김태홍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8인)

찬성의원(197인)

강기갑 강해속 권선택 권철현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양수 김영춘 김재윤 김태년 김한길 김효석 노웅래 맹형규 문희상 박영선 박창달 변재일 손봉숙 신중식 심재철 안병엽 양승조 오시덕 우원식 유승희 윤건영 이경숙 이계진 이근식 이미경 이상민 이영순 이인기 이철우 이화영 장영달 전재희 정병국 정장선 조경태 조정식 천영세

강기정 고경화 권영길 김광원 김낙순 김명주 김석준 김영덕 김용갑 김재홍 김태홍 김혁규 김희정 김현송 노문병 박명광 박진 박혁규 서병수 송영길 신학용 안경률 안상수 양형일 오영식 우윤근 유재건 윤원호 이경재 이광재 이낙연 이방호 이원영 이종걸 이혜봉 임인배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정종복 조성래 주호경

강길부 고진화 권영세 김교홍 김덕규 김무성 김성곤 김영숙 김우남 김춘진 김태환 김현미 남경필 노회찬 문석호 박병석 박찬석 배기선 서재관 송영선 심상정 안명옥 엄호성 오제세 유기준 유정복 이계경 이광철 이덕모 이병석 이윤성 이종구 이혜훈 임종인 장향숙 정덕구 정의용 정청래 조승수 진수희

강봉균 광성문 권오을 김기현 김덕룡 김문수 김애실 김영주 김원웅 김충환 김학송 김형주 노영민 단병호 문학진 박상돈 박찬숙 배일도 선병렬 신기남 심재엽 안민석 안홍준 염동연 우상호 유선후 이강래 이계안 이군현 이명규 이상경 이시종 이은영 이주호 이호웅 장복심 전병헌 정두언 정의화 제종길 조일현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1인)

박형준
 (안경률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의원 197인, 기권의원 1인임)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196인)

찬성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해속 고경화 고진화 광성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창달 박창달 변재일 서병수
 배기선 배일도 손봉숙 송영선
 서재관 선병렬 신기남 심상정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엄호성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선후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명규
 이근식 이덕모 이명규 이상경
 이미경 이병석 이시종 이은영
 이상민 이성권 이시종 이주호
 이영순 이윤성 이은영 이주호
 이인기 이종구 이주호 이호웅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장복심
 이화영 임종인 임종인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성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호 영 진 수 희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용 규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엄호성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96인, 찬성의원 196인임)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업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안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호 영 진 수 희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99인)

찬성의원(19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석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혁 규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재 관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기권의원(1인)

최 구 식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19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석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김형필	김효석	김희래	김나경	강해숙	강경화	강진화	강권선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노희찬	단병호	노맹형	문병호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박재완	박진진	박찬석	박찬숙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송영길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경필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희찬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석호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단병호	맹형규	민병두	박명광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문학진	문희상	박영선	박재완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박병석	박상돈	박찬숙	박혁규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이계진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이근식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종구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중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진병헌	진재희	정갑윤	정덕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광재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기우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목희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상배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원영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주호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이은영	이인기	이종구	이호웅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장복심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진병헌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두언
기권의원(1인)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의용
송영선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조승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진수희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최구식
				진영	채수찬	천영세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199인)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1인)
 이운성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체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진수희 진영채 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용규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1인)
 김명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국어기본법안

투표의원(205인)

찬성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중식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정갑윤	정덕구	정두연	정병국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조경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수찬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은영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한병도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반대의원(4인)

김명주 김영덕 김재원 송영선

기권의원(1인)

조성래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87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기권의원(5인)

박재완 서병수 송영선 원희룡
이혜훈

(이혜훈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기권의원 5인, 반대의원 없음)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90인)

찬성의원(190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90인)

찬성의원(188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제
 장윤석 장향숙 장병헌 장재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정의화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경태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진수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종걸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용규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기권의원(2인)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양형일 유시민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성래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藥事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5인)

찬성의원(193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영길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이계진 이광재 이근식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시종 이종걸
 이철우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장윤석 장영달 장영달 장윤석
 정갑윤 정의용 정의화
 조성래 조성래 진영 최경환
 최병국 최인기 최인기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창선

기권의원(2인)

김재원 이명규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79인)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제종길 조경태 조승수 조정식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6인)

김애실 윤건영 이종구 조성래
 최경환 홍준표

기권의원(7인)

김명주 김문수 김영덕 김재원
 나경원 신학용 진수희
 (맹형규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92인, 찬성의원 179인임)

○社會保障基本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83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주호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8인)

김애실 김양수 윤건영 이상민
 이종구 이혜훈 최경환 홍준표

기권의원(1인)

심재철

(이혜훈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반대의원 8인, 기권의원 1인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투표의원(186인)

찬성의원(117인)

강 봉 균	강 혜 숙	권 오 을	김 교 홍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겹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찬 석	박 홍 수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서 재 관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철 우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정 식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홍 미 영
홍 재 형			

반대의원(58인)

고 경 화	고 진 화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석	김 기 현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희 정	노 회 찬
박 재 완	박 진	박 혁 규	박 형 준
배 일 도	송 영 선	심 재 엽	안 경 룡

안 상 수	안 홍 준	엄 호 성	유 정 복
윤 건 영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규 택	이 명 규	이 방 호	이 윤 성
이 종 구	이 주 호	이 혜 훈	정 갑 윤
정 의 화	진 수 회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준 표	황 우 여		

기권의원(11인)

강 기 갑	단 병 호	박 상 돈	서 병 수
심 상 정	심 재 철	이 상 배	이 영 순
조 승 수	최 순 영	최 연 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투표의원(182인)

찬성의원(180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권 경 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석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겹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홍 수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재 관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의원(2인)

김명주 정문헌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응
 이화영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투표의원(186인)

찬성의원(186인)

강기갑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

투표의원(182인)

찬성의원(182인)

강기갑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박진	박찬석	박혁규	박형준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변재일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안병엽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윤원호	윤호중	이경재	이계경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석현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장경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이인기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진수희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정덕구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조경태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정배
홍준표	황우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0인)

찬성의원(175인)

강기갑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영덕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반대의원(3인)

김양수 김희정 최경환

기권의원(2인)

김기현 김영숙

○貨物流通促進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8인)

찬성의원(164인)

강봉균	강혜숙	고진화	구논희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숙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진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재관	손봉숙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덕구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5인)
 김애실 박형준 윤건영 이종구
 최경환

기권의원(9인)
 강기갑 고경화 김무성 김영덕
 단병호 송영선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조조약비준동의안

투표의원(179인)

찬성의원(179인)

강기갑	강봉균	강혜숙	구논희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혁규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
 의안

투표의원(176인)

찬성의원(175인)

강 봉 균 강 혜 숙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병 엽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웅 이 화 영
 임 인 배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기권의원(1인)

송 영 선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의탐색
 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비
 준동의안

투표의원(182인)

찬성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혜 숙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웅 이 화 영
 임 인 배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반대의원(1인)

송 영 선

(손봉숙·안민석·원혜영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82인, 찬성의원 181인임)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

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투표의원(186인)

찬성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단 병 호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업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업 호 성
 오 시 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기권의원(2인)

권 경 석 송 영 선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

투표의원(181인)

찬성의원(16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혜 숙 고 진 화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석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단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박찬석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박형준	박희태	박배기	박배일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백원우	변재일	배서갑	배병수	김부결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신기남	신중식	심재엽	심재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엄호성	오시덕	오영식	우상호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유시민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이덕모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이상경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박병석	박상돈	박세일	박세환
이인기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박진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이화영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전여옥	전재희	정덕구	정문헌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신계륜	신봉숙	송영길	송영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신학용	심상정	심재택	신중식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진수희	진영	천정배	최구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최재천	최철국	한선교	허태열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우제창
현애자	홍재형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반대의원(9인)

김병호	김영덕	박재완	유기준
이명규	이상배	채수찬	최규식
한광원			

기권의원(6인)

김현미	김형주	박혁규	윤원호
홍미영	홍준표		

○出席議員(285人)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김석준	김양수	김선미	김성곤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김애실	김영주	김영덕	김영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영숙	김원기	김영춘	김용갑
김교홍	김근태	김기석	김기춘	김우남	김재윤	김원웅	김재경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재원	김종인	김진표	김정훈
				김종률	김태년	김태홍	김춘진
				김충환	김학원	김한길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노영민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단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문석호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계동	박상돈	박세일	박세환
				박병석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신계륜	신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학용	심상정	심재택	신중식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우제창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請暇議員(2人)

김 홍 일 박 승 환

○出席國務委員

부 총 리 겸 이 현 재
 재정경제부장관
 부 총 리 겸 오 명
 과학기술부장관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행정자치부장관 허 성 관
 문화관광부장관 정 동 채
 농 림 부 장 관 허 상 만
 보건복지부장관 김 근 태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出席政府委員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 영 식
 통 일 부 차 관 이 봉 조
 외교통상부차관 최 영 진
 정보통신부차관 김 창 곤
 건설교통부차관 김 세 호

【報告事項】

○議員退職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이상락	경기성남중원	열린우리당

(12월10일)

○特別委員長選任

신 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
 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 한 길

(12월23일)

○特別委員選任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강창일 김재홍 김태년 김태홍
 김희선 노웅래 박홍수 신학용
 안민석 유기홍 윤호중 이광철
 제종길 지병문 한명숙

한나라당

김영숙 김재경 박계동 박성범
 박 진 심재철 이계진 이명규
 이성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
 권영길 이인제 한화갑

(12월15일)

신 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
 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강봉균 구논회 김진표 김한길
 노영민 박병석 박상돈 원혜영
 이광재 이호웅

한나라당

권경석 김충환 심재엽 유정복
 정두언 최경환 한선교 홍문표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
 류근찬 신국환

(12월21일)

○幹事選任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신 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 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	박병석	열린우리당

(12월23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신 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 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	이윤성	한나라당

(12월27일)

○幹事改選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교육	이군현	한나라당

(12월24일)

○常任委員辭任및補任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김덕규	국방	보건복지	열린우리당
이상락	보건복지	국방	

(12월9일)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이원영	산업자원	법제사법	열린우리당
이은영	재정경제	법제사법	
김태년	법제사법	산업자원	
송영길	법제사법	재정경제	
박승환	법제사법	농림해양수산	한나라당
주호영	농림해양수산	법제사법	

(12월10일)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안명옥	이혜훈	한나라당

(12월10일)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최성	우제창	열린우리당

(12월14일)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박재완	산업자원	보건복지	한나라당
곽성문	보건복지	산업자원	
윤건영	재정경제	보건복지	
이강두	보건복지	재정경제	

(12월23일)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조경태	권선택	열린우리당

(12월28일)

○特別委員辭任및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범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	원혜영	김영춘	열린우리당
	유정복	이윤성	한나라당

(12월24일)

○議案提出

정보통신부산하기관의법인신용카드사용에대한감사청구안

(12월9일 강성종 · 권오을 · 김희정 · 남경필 ·

류근찬 · 박순자 · 박찬숙 · 손봉숙 · 안민석 · 오제세 · 우제창 · 이계진 · 이상배 · 이영순 · 임인배 · 장복심 · 정문헌 · 조배숙 · 조승수 · 최경환 · 현애자 의원 의원 발의)

12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박형준 · 김양수 · 이계경 · 정종복 · 권철현 · 이성권 · 안홍준 · 정병국 · 유기준 · 심재철 · 김병호 · 최구식 · 김석준 · 유필우 · 고흥길 · 박재완 의원 발의)

12월1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유인태 · 강기정 · 강길부 · 강창일 · 강혜숙 · 구논회 · 김교홍 · 김기석 · 김낙순 · 김덕규 · 김맹곤 · 김부겸 · 김선미 · 김성곤 · 김영주 · 김영춘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홍 · 김한길 · 김혁규 · 김현미 · 김형주 · 김희선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진 · 문희상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영선 · 박찬석 · 박홍수 · 백원우 · 복기왕 · 서갑원 · 서재관 · 선병렬 · 송영길 · 신계륜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심재덕 · 안민석 · 안병엽 · 안영근 · 양형일 · 오영식 · 오시덕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유시민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래 · 이경숙 · 이근식 · 이기우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락 · 이상민 · 이석현 · 이용희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영 · 이철우 · 이호웅 · 이화영 · 임종석 · 임종인 · 임채정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정덕구 · 정봉주 · 정성호 · 정세균 · 정장선 · 정청래 · 제종길 · 조경태 · 조성래 · 조정식 · 지병문 · 채수찬 · 천정배 · 최성 · 최규성 · 최규식 · 최용규 · 최재성 · 최재천 · 최철국 · 한광원 · 한명숙 · 한병도 · 홍미영 · 홍창선 · 고진화 · 고흥길 · 공성진 · 권오을 · 김애실 · 김형오 · 남경필 · 박계동 · 박성범 · 박재완 · 박찬숙 · 배일도 · 서병수 · 안경률 · 엄호성 · 이강두 · 이경재 · 이명규 · 이병석 · 이성권 · 이윤성 · 이재오 · 이재웅 · 이주호 · 이혜훈 · 전재희 · 정두언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주호영 · 진수희 · 허천 · 황우여 · 신국환 · 정몽준 · 최인기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

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종인·김홍일·손봉숙·이낙연·이상열·이정일·한화갑 의원 발의)

12월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索道·軌道法中改正法律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김동철·김맹곤·이호웅·조경태·장경수·김기석·이강래·정장선·윤호중·노영민 의원 발의)

交通安全法中改正法律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윤호중·김기석·한병도·최재성·정장선·노영민·주승용·이강래·강봉균·우상호·김태년·김맹곤·복기왕·송영길·이호웅·최인기·김용갑·김영주·김동철·조경태·김한길·임종석·안택수 의원 발의)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주승용·이낙연·장복심·김기석·이호웅·원혜영·김우남·이강래·조경태·김맹곤·윤호중·노영민·정장선·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최재천)징계안

(12월9일 이병석 의원 외 120인 발의)

국회의원(노회찬)징계안

(12월9일 이병석 의원 외 120인 발의)

이상 2건 12월10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강기정·최규성·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이기우·한병도 의원 발의)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

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醫療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藥事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9건 12월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박성범 의원 발의)

(12월10일 박성범 의원 외 12인 발의)

宅地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12월10일 조경태·장향숙·윤호중·이호웅·박상돈·조성래·주승용·김기석·노영민·김한길·김영주·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주성영)징계안

(12월10일 유선호 의원 외 150인 발의)

국회의원(박승환)징계안

(12월10일 유선호 의원 외 150인 발의)

국회의원(김기현)징계안

(12월10일 유선호 의원 외 150인 발의)

이상 3건 12월13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오제
 세 의원 대표발의)

(12월10일 오제세 · 복기왕 · 김춘진 · 변재일 ·
 강혜숙 · 박상돈 · 장복심 · 강성중 · 이시중 ·
 서재관 · 안민석 · 문석호 · 류근찬 · 이원영 의
 원 발의)

12월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발의)

(12월10일 최재천 의원 외 150인 발의)

12월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식품안전기본법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12월10일 고경화 · 전재희 · 광성문 · 정화원 ·
 정형근 · 김기현 · 윤건영 · 심재철 · 김충환 ·
 김문수 의원 발의)

12월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賃貸住宅法中改正法律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12월13일 최철국 · 김맹곤 · 박성범 · 안민석 ·
 김태홍 · 윤원호 · 오시덕 · 이시중 · 장향숙 ·
 제종길 · 류근찬 · 정성호 · 김한길 · 장복심 ·
 황우여 · 최재성 · 신국환 · 유정복 · 우제창 의
 원 발의)

12월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住宅賃貸借保護法中改正法律案(최철국 의원 대표
 발의)

(12월13일 최철국 · 김맹곤 · 박성범 · 안상수 ·
 안민석 · 김태홍 · 윤원호 · 이시중 · 장향숙 ·
 제종길 · 서재관 · 송영길 · 이윤성 · 이해봉 ·
 정성호 · 김한길 · 장복심 · 황우여 · 최재성 ·
 우제창 의원 발의)

12월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중명전의일제침략역사자료관추진권고결의안

(12월13일 김희선 · 강기갑 · 강혜숙 · 김낙순 ·
 김선미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김충환 ·
 김태년 · 김태홍 · 김현미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문학진 · 박기춘 · 박홍수 · 송영길 ·
 신기남 · 신중식 · 양승조 · 오시덕 · 우원식 ·
 우제창 · 원혜영 · 유선호 · 유승희 · 윤호중 ·
 이강래 · 이원영 · 이인영 · 이종걸 · 이화영 ·
 임종석 · 정청래 · 조경태 · 천정배 · 최규식 ·
 최재성 · 홍미영 · 백원우 의원 발의)

12월14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意匠法中改正法律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12월13일 오영식 · 임종석 · 최재성 · 민병두 ·

복기왕 · 안민석 · 장복심 · 박재완 · 안병엽 ·
 백원우 · 유승희 · 박순자 의원 발의)

特許法中改正法律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12월13일 오영식 · 임종석 · 최재성 · 민병두 ·
 복기왕 · 안민석 · 장복심 · 박재완 · 안병엽 ·
 백원우 · 유승희 · 박순자 의원 발의)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12월13일 오영식 · 임종석 · 최재성 · 민병두 ·
 복기왕 · 안민석 · 장복심 · 박재완 · 안병엽 ·
 백원우 · 유승희 · 박순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14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廢止法律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12월13일 이상민 · 선병렬 · 우윤근 · 우원식 ·
 김재윤 · 김태년 · 유승희 · 서갑원 · 한병도 ·
 한광원 · 조정식 · 김원웅 · 이화영 · 권선택 ·
 노영민 · 문석호 · 전병헌 · 구논희 · 우제창 ·
 송영길 의원 발의)

12월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이철우)징계안

(12월13일 주성영 의원 발의)

12월14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2월14일 민병두 · 이인영 · 박영선 · 선병렬 ·
 이광철 · 김재윤 · 김태홍 · 노웅래 · 이은영 ·
 안민석 · 우상호 · 정청래 · 이미경 · 김재홍 ·
 윤원호 의원 발의)

12월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전여옥)징계안

(12월14일 천영세 의원 외 20인 발의)

국회의원(남경필)징계안

(12월14일 천영세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2건 12월15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山林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12월14일 이영호 · 신중식 · 우윤근 · 이시중 ·
 오시덕 · 이철우 · 김우남 · 이상민 · 김효석 ·
 우원식 · 김선미 · 박홍수 · 강기갑 의원 발의)

草地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12월14일 이영호 · 신중식 · 우윤근 · 이시중 ·
 오시덕 · 이철우 · 김우남 · 이상민 · 김효석 ·
 우원식 · 김선미 · 박홍수 · 강기갑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
 律中改正法律案**

(12월15일 정부 제출)
 12월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
 (12월15일 정부 제출)
 12월1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國家安全保障會議法中改正法律案
 (12월15일 정부 제출)
 12월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에너지기본법안
 (12월15일 정부 제출)
 12월16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
 (이상 2건 12월1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12월15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12월24일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2월24일 정부 제출)
 12월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代案)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건 12월24일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自然災害對策法改正法律案(代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12월28일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이상 3건 12월28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酒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이상 5건 12월28일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건 12월28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12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河川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2월28일 이호웅·현애자·이근식·신학용·류근찬·정성호·엄호성·오시덕·김교홍·안병엽·박홍수·신기남·이해봉·박순자·문학진·신중식·박재완·오제세·김원웅·황우여 의원 발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12월28일 김태년·강기정·권선택·김덕규·김부겸·김영주·김영춘·김원웅·김종률·김태홍·김형주·노현송·박명광·백원우·복기왕·서갑원·선병렬·심재덕·안민석·엄호성·황우여·염동연·오영식·유시민·윤호중·이광철·이상민·이시중·이운성·이철우·이화영·임종석·장경수·장복심·장향숙·정두언·정봉주·정청래·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12월28일 허태열·이재오·엄호성·박혁규·김기현·김문수·박종근·이경재·박창달·김성조·김재경·정갑윤·임인배·김형오·김광원·김무성·윤원호·김병호·김정부·이방호·이규택·김재원·오제세·이근식·장길부·박승환·안택수·이인기·안병엽·김양수·이재창·안경률·문학진·주성영·김학송·한선교·허천·김동철·김태환 의원 발의)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12월28일 허태열·김학송·정갑윤·한선교·안택수·허천·김동철·김재원·엄호성·문학진·김태환·김덕규·박승환·이재오·김재경·안경률·김병호·이인기·박종근·전재희·안병엽 의원 발의)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2월28일 주승용·우윤근·이낙연·이호웅·김동철·김기석·장복심·김우남·김맹곤·염동연·김효석·최인기·배일도·최철국·신중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12월28일 김재원·김광원·김명주·김영덕·김영숙·김충환·김형오·박순자·박승환·박재완·안택수·엄호성·유기준·이경제·이규택·이방호·이상득·이상배·정병국·정중복·홍문표 의원 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12월28일 허태열·김학송·정갑윤·한선교·안택수·허천·김동철·김재원·엄호성·문학진·김대환·김덕규·박승환·이재오·김재경·안경률·김병호·이인기·박종근·전재희·안병엽 의원 발의)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12월28일 김희선·김영춘·김원웅·김종률·김태홍·문학진·박순자·엄호성·오시덕·오제세·유승희·이근식·이목희·이상경·정성호·주승용·최재성·홍창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12월29일 정무위원장 제출)

○議案審査**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2월15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辯護士法中改正法律案

(6월3일 정부 제출)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關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정갑윤·강재섭·김기현·김석준·김영춘·김정부·김대환·김형주·노웅래·노현송·박명광·선병렬·신국환·심재철·안상수·엄호성·유시민·이광철·이상락·이영호·이재오·이재창·이혜훈·전재희·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성호·최철국·허태열·황우여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11월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歸屬財産處理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9월4일 정성호·노현송·심재덕·김기석·

우윤근·한명숙·노영민·문희상·서갑원·김원웅·임채정·유재건 의원 발의)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10월1일 정부 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1월10일 김효석·한화갑·황우여·유정복·홍창선·김재운·오제세·류근찬·김원웅·김덕규·송영길·신국환·박영선·오시덕·김태년·신중식·이계안·김정부·정덕구 의원 발의)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30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6월30일 정부 제출)

國債法中改正法律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7월15일 김진표·김명자·김정부·강봉균·박영선·신국환·신중식·심재덕·안민석·우제창·우제항·유필우·이계안·이기우·이상민·이종구·장영달·정두언·조정식 의원 발의)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9월21일 엄호성·김정부·김양수·윤건영·이혜훈·최경환·김애실·이종구·박병석·우제창·박세일·김종률·한병도·서병수 의원 발의)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9월23일 정부 제출)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0월1일 정부 제출)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10월5일 박영선·송영길·정덕구·엄호성·우제창·염동연·이상경·김영춘·김희선·김진표·오제세 의원 발의)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10월28일 김정부·권경석·김애실·김양수·김효석·엄호성·윤건영·이재웅·이혜훈·최경환 의원 발의)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1월10일 김효석·김홍일·엄호성·최인기·손봉숙·신국환·이상열·심상정·이정일·이낙연·송영길·박영선·이계안·정덕구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6월10일 전재희 · 강재섭 · 김석준 · 이군현 · 진수희 · 안상수 · 이인기 · 임태희 · 우제항 · 이규택 · 김애실 · 고흥길 · 이해봉 · 김충환 · 이강두 · 고진화 · 이상득 · 김성조 · 엄호성 · 전여옥 의원 발의)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7월12일 이재창 · 황우여 · 유정복 · 최인기 · 정문헌 · 김재원 · 박혁규 · 유기준 · 김석준 · 안상수 · 이재오 · 이인기 · 박상돈 · 고진화 · 김교홍 · 이해훈 · 이종걸 · 정종복 · 정병국 · 신국환 · 허태열 · 유근찬 의원 발의)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9월15일 김정부 · 권경석 · 김양수 · 김애실 · 김용갑 · 김재원 · 김학송 · 박재완 · 서재관 · 안명옥 · 안홍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이상득 · 이인기 · 이재오 · 이종구 · 이철우 · 정성호 · 황우여 의원 발의)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9월20일 윤건영 · 김석준 · 김애실 · 김재원 · 김정부 · 박세환 · 박재완 · 송영길 · 신중식 · 유승민 · 유정복 · 이군현 · 이인기 · 이해봉 · 전여옥 의원 발의)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9월22일 우제창 · 노영민 · 염동연 · 송영길 · 최인기 · 장항숙 · 박병석 · 한병도 · 심재덕 · 황우여 · 이상락 · 노현송 · 우제항 · 김종률 · 양형일 · 유시민 · 신중식 · 이원영 · 안병엽 · 홍창선 · 안민석 · 오제세 · 박영선 · 장경수 · 김태홍 · 조배숙 · 이상경 · 장복심 의원 발의)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9월24일 윤건영 · 김석준 · 김애실 · 김재원 · 김정부 · 박세환 · 박재완 · 유승민 · 유정복 · 이군현 · 이인기 · 이종구 · 이해봉 · 전여옥 의원 발의)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8월30일 박재완 · 이규택 · 박세환 · 서병수 · 유정복 · 황우여 · 김애실 · 이주호 · 정병국 · 김영춘 · 노웅래 의원 발의)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9월6일 남경필 · 유승민 · 문석호 · 박세환 · 최인기 · 안상수 · 김재원 · 심재덕 · 전여옥 · 정성호 · 박재완 · 박성범 · 정문헌 · 김종률 · 이인기 · 허천 · 정병국 · 신중식 · 정종복 ·

오제세 의원 발의)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9월15일 윤건영 · 김석준 · 김애실 · 김재원 · 김정부 · 박세환 · 박재완 · 유승민 · 유정복 · 이군현 · 이인기 · 이종구 · 이해봉 · 전여옥 의원 발의)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

(9월22일 임태희 · 고흥길 · 권경석 · 권영세 · 김문수 · 김재경 · 김정훈 · 남경필 · 박종근 · 박진 · 안택수 · 엄호성 · 이계경 · 이재오 · 이해훈 · 최구식 · 허천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6월29일 선병렬 · 박명광 · 양승조 · 박상돈 · 박찬숙 · 박기춘 · 권선택 · 이상민 · 구노희 · 박병석 · 복기왕 의원 외 2인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김효석 · 김종인 · 김홍일 · 손봉숙 · 이승희 · 이정일 · 한화갑 · 정세균 · 한선교 · 최인기 의원 외 2인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7월3일 이재오 · 이재창 · 전재희 · 김재원 · 이해봉 · 김무성 · 박계동 · 김태환 · 김석준 · 허태열 · 최경환 · 박진 · 김충환 · 권영세 · 진수희 · 엄호성 · 정문헌 · 황우여 · 고흥길 · 정병국 · 박순자 · 유정복 · 이인기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7월12일 이재창 · 황우여 · 유정복 · 최인기 · 이근식 · 이규택 · 김재원 · 박혁규 · 김석준 · 안상수 · 이재오 · 이인기 · 조경태 · 김교홍 · 노현송 · 이종걸 · 정종복 · 정병국 · 신국환 · 허태열 · 유근찬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7월28일 박상돈 · 김우남 · 김원웅 · 김종률 · 김태홍 · 김한길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유근찬 · 문병호 · 문학진 · 서재관 · 선병렬 · 신중식 · 심재덕 · 안민석 · 안병엽 · 유선호 · 유시민 · 이강래 · 이계안 · 이시종 · 장경수 · 제종길 · 주승용 · 진수희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8월26일 노현송 · 권선택 · 김낙순 · 김영선 · 김태홍 · 노웅래 · 서재관 · 신중식 · 심재덕 · 심재철 · 엄호성 · 오제세 · 우제창 · 우제항 · 유시민 · 유정복 · 이광재 · 이근식 · 이시종 ·

장경수 · 정청래 · 제종길 · 조성래 · 최인기 ·
홍미영 · 황우여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8월30일 박재완 · 이규택 · 박세환 · 서병수 ·
유정복 · 황우여 · 김애실 · 이주호 · 정병국 ·
김영춘 · 노웅래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박계동 의원 대표발의)
(8월31일 박계동 · 송영길 의원 외 69인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9월1일 한병도 · 이규택 · 정갑윤 · 김혁규 ·
이광재 · 구논희 · 백원우 · 노현송 · 노영민 ·
신중식 · 이근식 · 이원영 · 오제세 · 배일도 ·
김태년 · 강재섭 · 김영춘 · 이재오 · 오영식 ·
최규성 · 강기정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9월10일 이상민 · 문석호 · 노영민 · 유승희 ·
권선택 · 송영길 · 이영호 · 김진표 · 선병렬 ·
노웅래 · 김종률 · 우원식 · 박병석 · 전병헌 ·
한광원 · 우윤근 · 이계안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9월14일 김양수 · 안홍준 · 이성권 · 김재경 ·
박형준 · 이상배 · 김희정 · 조경태 · 권영세 ·
김혁규 · 김영덕 · 김용갑 · 권경석 · 이계진 ·
정병국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11월2일 김병호 · 안택수 · 이상득 · 이인기 ·
엄호성 · 심재엽 · 김덕규 · 주승용 · 백원우 ·
나경원 · 허태열 · 서병수 · 김재원 · 권철현 ·
박형준 · 이재용 · 이근식 · 신중식 · 김양수 ·
염동연 · 유기준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임태희 · 유승민 · 고흥길 · 엄호성 ·
이인기 · 박재완 · 심재철 · 김양수 · 이재오 ·
이해봉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11월18일 김애실 · 권영세 · 김석준 · 김양수 ·
김정부 · 김정훈 · 남경필 · 박순자 · 박종근 ·
서상기 · 신국환 · 심재엽 · 심재철 · 엄호성 ·
오제세 · 이계경 · 이종구 · 이해훈 · 임태희 ·
정덕구 · 최경환 의원 발의)

관세법중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8월30일 박재완 · 이규택 · 박세환 · 서병수 ·

유정복 · 황우여 · 김애실 · 이주호 · 정병국 ·
김영춘 · 노웅래 의원 발의)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9월3일 정병국 · 오제세 · 김영숙 · 손봉숙 ·
안상수 · 정문헌 · 이상득 · 김기현 · 이경제 ·
심재철 · 신중식 · 서병수 · 안홍준 · 이근식 ·
정종복 · 이규택 · 이종구 · 유기준 · 박세환 ·
허천 · 고흥길 · 백원우 · 정성호 · 황우여 ·
나경원 · 김영춘 의원 발의)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9월10일 박재완 · 유정복 · 김정부 · 유승민 ·
윤건영 · 이해훈 · 권경석 · 이종구 · 최경환 ·
김애실 의원 발의)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박혁규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박혁규 · 유승민 · 고흥길 · 이근식 ·
이해훈 · 김덕규 · 주성영 · 이인기 · 정병국 ·
이상배 · 우제항 · 안홍준 · 이규택 · 김재원 ·
배일도 · 정성호 · 이상득 · 엄호성 · 서병수 ·
이재창 · 임인배 · 이윤성 · 정의화 · 염동연 ·
공성진 · 김명주 · 이근현 · 이원영 · 홍창선 ·
김태홍 · 황우여 의원 발의)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9월10일 박재완 · 유정복 · 김정부 · 유승민 ·
윤건영 · 이해훈 · 권경석 · 이종구 · 최경환 ·
김애실 의원 발의)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11월23일 박병석 · 이상민 · 정덕구 · 정성호 ·
권선택 · 신중식 · 오시덕 · 안병엽 · 이종걸 ·
엄호성 · 이근식 · 오제세 · 강봉균 의원 발의)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

(7월23일 김영덕 · 권경석 · 김기현 · 김명주 ·
김석준 · 김애실 · 김용갑 · 김우남 · 김재원 ·
노웅래 · 서재관 · 신중식 · 안상수 · 안홍준 ·
이계경 · 이근현 · 이기우 · 이시종 · 이인기 ·
정문헌 · 정몽준 · 정성호 · 최인기 의원 발의)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6월29일 이재창 · 안상수 · 이인기 · 심재덕 ·
이재오 · 노현송 · 김재원 · 유기준 · 서병수 ·
이상락 · 황우여 · 박세환 · 노웅래 · 강혜숙 ·
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32건 폐기하기로 의결)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9월15일 윤건영 · 김석준 · 김애실 · 김재원 ·
김정부 · 박세환 · 박재완 · 심재철 · 유승민 ·
유정복 · 이근현 · 이인기 · 이종구 · 이해봉 ·

전여옥 의원 발의)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10월1일 정부 제출)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6월10일 전재희 · 강재섭 · 김석준 · 이군현 · 진수희 · 안상수 · 이인기 · 임태희 · 이규택 · 고흥길 · 이강두 · 김충환 · 이한구 · 고진화 · 이상득 · 김성조 · 엄호성 · 전여옥 · 김재경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6월17일 심재철 · 황우여 · 유승민 · 안상수 · 김양수 · 안명옥 · 김충환 · 이경제 · 박찬숙 · 김재경 · 임인배 · 박계동 · 송영선 · 이재오 · 김태환 · 박승환 · 이해훈 · 배일도 · 허태열 · 김무성 · 권영세 · 김병호 · 정봉주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7월7일 홍재형 · 노웅래 · 황우여 · 유정복 · 이상경 · 김우남 · 송영길 · 오제세 · 정성호 · 정장선 · 박병석 · 조정식 · 김태홍 · 김종률 · 유시민 · 홍미영 · 조정태 · 박명광 · 김교홍 · 안상수 · 박영선 · 이종걸 · 정종복 · 심재덕 · 김영주 · 허태열 · 구논희 · 정병국 · 문병호 · 김석준 · 임종석 · 최용규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7월7일 이계안 · 박영선 · 김종률 · 문석호 · 송영길 · 박병석 · 김충환 · 유정복 · 서재관 · 노현송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7월19일 이계안 · 박상돈 · 정성호 · 제종길 · 김형주 · 장복심 · 이석현 · 변재일 · 김맹곤 · 이경숙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8월31일 박병석 · 최인기 · 이규택 · 정성호 · 박영선 · 송영길 · 김종률 · 오제세 · 노현송 · 김태년 · 구논희 · 유시민 · 선병렬 · 우제창 · 이상민 · 오영식 · 신중식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9월1일 김효석 · 정종복 · 최규성 · 정봉주 · 이낙연 · 최인기 · 손봉숙 · 박세환 · 문학진 · 김태홍 · 이근식 · 이상경 · 이철우 · 오제세 · 정두언 · 정의화 · 서병수 · 노영민 · 송영길 · 박종근 · 노현송 · 우제창 · 김홍일 · 한화갑 · 이정일 · 이승희 · 임종석 · 염동연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9월15일 윤건영 · 김석준 · 김애실 · 김재원 · 김정부 · 박세환 · 박재완 · 유승민 · 유정복 · 이군현 · 이인기 · 이종구 · 이해봉 · 전여옥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9월15일 김양수 · 이성권 · 안홍준 · 권경석 · 이종구 · 엄호성 · 문석호 · 최경환 · 박형준 · 윤건영 · 이상배 · 김기현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9월21일 이상민 · 문석호 · 노영민 · 유승희 · 권선택 · 송영길 · 이영호 · 김진표 · 선병렬 · 노웅래 · 김종률 · 우원식 · 박병석 · 전병헌 · 한광원 · 우윤근 · 이계안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10월1일 정부 제출)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10월26일 김낙성 · 김우남 · 이인제 · 장경수 · 강기갑 · 안명옥 · 최인기 · 심재덕 · 류근찬 · 김영덕 · 박홍수 · 이영호 · 이정일 · 신중식 · 홍문표 · 김광원 · 한광원 · 이상배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김효석 · 한화갑 · 이근식 · 정성호 · 김재원 · 허태열 · 엄호성 · 서병수 · 유승민 · 안상수 · 이해훈 · 김홍일 · 서재관 · 이해봉 · 이인기 · 제종길 · 최인기 · 손봉숙 · 김성곤 · 김원웅 · 김덕규 · 오제세 · 신국환 · 이상열 · 이원영 · 유선호 · 이시중 · 심재덕 · 배일도 · 한병도 · 신중식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11월10일 김우남 · 박홍수 · 조일현 · 강기갑 · 김낙성 · 이낙연 · 이상배 · 이철우 · 김동철 · 이영호 · 김영덕 · 강창일 · 김재윤 · 강기정 · 천영세 · 홍문표 · 이정일 · 현애자 · 이은영 · 심재엽 · 류근찬 · 박승환 · 이계진 · 공성진 · 지병문 · 이인영 · 김교홍 · 임인배 · 김재경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월16일 강봉균 · 이강래 · 한병도 · 이계진 · 이상민 · 엄호성 · 송영길 · 김성곤 · 윤호중 · 김동철 · 최철국 · 김진표 · 김종률 · 노영민 · 우제창 · 최구식 · 서갑원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7일 문석호 · 복기왕 · 양승조 · 최용규 · 정장선 · 이상민 · 우제창 · 오시덕 · 송영길 ·

박희태·박상돈·한병도·엄호성 의원 발의)
酒稅法中改正法律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

(10월22일 안택수·이낙연·장경수·허태열·김병호·이윤성·정갑윤·김태환·최인기·박혁규·김학송·안홍준·정장선·허천·한선교·김한길·이상득·권경석·강재섭·박종근 의원 발의)

酒稅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10월26일 임인배·신국환·곽성문·권경석·권영세·김광원·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태환·김학송·김형오·맹형규·박종근·박찬석·박찬숙·송영선·심재엽·안경률·안상수·유승민·이강두·이군현·이규택·이상득·이주호·이혜훈·임태희·장윤석·주호영·진영·최경환·최연희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1월10일 김효석·한화갑·김홍일·이해봉·박재완·정성호·심재덕·김덕규·엄호성·신중식·김양수·전재희·황우여·신국환·송영길·박영선·이계안·김정부·장복심·정덕구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11월12일 김영춘·강길부·권선택·김종률·김현미·김희선·김형주·문석호·문학진·민병두·박명광·박영선·송영길·양승조·이인영·이은영·전병헌·정성호 의원 발의)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8월9일 김영춘·김덕규·임종석·배일도·이승희·정성호·김현미·박명광·노현송·구노회·송영길·최재성·이종걸·정청래·이해봉·권영길·김춘진·장향숙·김태년·김희선·고진화·심상정·최규식·신중식·염동연·문병호·심재덕·오제세·최용규·김태홍 의원 발의)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이계안·박영선·이상경·홍재형·심상정·이종구·박병석·김현미·김효석·송영길·심재덕·오제세 의원 발의)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9월22일 김효석·한화갑·이낙연·이정일·이승희·장영달·이계안·송영길·박영선·최인기 의원 발의)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10월5일 김희선·김영춘·홍미영·정청래·송영길·노현송·문학진·김한길·심재덕·최인기·허태열·정성호·이시종·구노회·엄호성·이은영·우제창·김덕규·정두언·이상경·이종걸·오제세·신중식 의원 발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김효석·손봉숙·이낙연·이상열·이승희·이정일·이강래·정세균·최인기 의원 외 1인 발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6월30일 정부 제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9월23일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2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제출)

이상 74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외기권의탐색및평화적목적의이용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이상 3건 11월19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요르단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11월24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統一教育支援法中改正法律案

(6월3일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

(6월18일 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自然災害對策法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

(7월2일 심재덕·서재관·원혜영 의원 외 29인 발의)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김춘진 · 이상락 · 이재오 · 유재건 · 장복심 · 유정복 · 김현미 · 박승환 · 문학진 · 백원우 · 조경태 · 박성범 · 안상수 · 오제세 · 이기우 · 최규식 · 장향숙 · 최인기 · 윤원호 · 김기현 · 안병엽 · 정성호 · 노현송 · 이광철 · 김덕규 · 김형주 · 이철우 · 안명옥 · 박영선 · 염동연 · 강혜숙 · 신국환 · 류근찬 · 이종걸 · 심재철 · 이해훈 · 이상열 · 정몽준 · 김한길 의원 발의)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11월2일 정부 제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7월14일 서재관 · 심재철 · 박찬숙 · 김석준 · 유정복 · 신중식 · 심재덕 · 노현송 · 이상경 · 노웅래 · 정성호 · 김우남 · 홍미영 · 조경태 · 조배숙 · 이근식 · 오영식 · 이원영 · 정병국 · 김기현 · 이인기 · 최인기 · 강기정 의원 발의)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10월18일 정부 제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7월14일 김희선 · 강기갑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 강성종 · 강창일 · 강혜숙 · 고진화 · 구논회 · 권선택 · 권영길 · 권오을 · 김교홍 · 김근태 · 김기석 · 김낙순 · 김덕규 · 김동철 · 김맹곤 · 김명자 · 김부겸 · 김선미 · 김성곤 · 김영주 · 김영춘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김종률 · 김종인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홍 · 김한길 · 김혁규 · 김현미 · 김형주 · 김홍일 · 김효석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노희찬 · 단병호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진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 박찬석 · 박홍수 · 배기선 · 배일도 · 백원우 · 변재일 · 복기왕 · 서갑원 · 서재관 · 선병렬 · 송영길 · 신계륜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심상정 · 심재덕 · 안민석 · 안병엽 · 안영근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시덕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향 · 원혜영 · 원희룡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유시민 · 유인태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래 · 이경숙 · 이계안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락 · 이상민 · 이석현 · 이시중 · 이영순 · 이영호 · 이용희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영 ·

이재오 · 이정일 · 이종걸 · 이철우 · 이해찬 · 이호웅 · 이화영 · 임종석 · 임종인 · 임채정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전병헌 · 정덕구 · 정동채 · 정병국 · 정봉주 · 정성호 · 정세균 · 정의용 · 정장선 · 정청래 · 제종길 · 조경태 · 조배숙 · 조성래 · 조성태 · 조승수 · 조일현 · 조정식 · 주승용 · 지병문 · 채수찬 · 천영세 · 천정배 · 최규성 · 최규식 · 최성 · 최순영 · 최용규 · 최재성 · 최재천 · 최철국 · 한광원 · 한명숙 · 한병도 · 현애자 · 홍미영 · 홍재형 · 홍창선 의원 발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발의)

(9월10일 유기준 의원 외 114인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韓國精神文化研究院育成法中改正法律案

(6월2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월9일 정부 제출)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월30일 정부 제출)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1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6건 교육위원장 보고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11월16일 김석준 · 박재완 · 박순자 · 황우여 · 김애실 · 정종복 · 권영세 · 김희정 · 이인기 · 이성권 · 진영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9월22일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8월31일 서병수 · 최인기 · 이규택 · 유기준 · 김재원 · 한화갑 · 류근찬 · 정병국 · 송영길 · 박재완 · 유시민 · 안상수 · 이상득 · 박성범 · 김덕규 · 정의화 · 김병호 · 박승환 · 권오을 · 안택수 · 안경률 의원 발의)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9월2일 엄호성 · 김무성 · 김정부 · 광성문 ·

유승민 · 한선교 · 윤건영 · 이종구 · 정의화 · 정병국 의원 발의)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10월28일 문학진 · 박명광 · 김현미 · 김형주 · 원혜영 · 이상경 · 김영춘 · 채수찬 · 이계진 · 신학용 · 전병헌 · 오제세 · 우제창 · 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9월30일 강재섭 · 이해봉 · 김석준 · 양형일 · 이명규 · 박창달 · 서상기 · 박근혜 · 지병문 · 이인기 · 안택수 · 최경환 · 강기정 · 김재원 · 박종근 · 진영 · 염동연 · 주성영 · 김태환 · 광성문 · 임인배 · 김광원 · 이상득 · 이한구 · 김동철 · 권오을 · 주호영 · 김태홍 · 김희정 · 김영선 · 이병석 · 정문헌 · 김성조 · 정종복 · 이상배 · 심재엽 · 허천 · 이덕모 · 박세환 · 장윤석 · 신국환 · 최연희 · 이계진 의원 발의)

대덕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

(10월29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국어기본법안

(6월3일 정부 제출)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박찬숙 · 유정복 · 박성범 · 류근찬 · 노웅래 · 심재철 · 김석준 · 맹형규 · 김맹곤 · 이재오 · 박세환 · 안상수 · 이해봉 · 선병렬 · 김영덕 · 김충환 · 심재덕 · 황우여 · 최인기 · 강혜숙 · 구논희 · 박진 · 박재완 · 김태환 · 강재섭 · 김기현 · 손봉숙 · 이재창 · 안택수 · 정성호 · 노현송 · 이인기 · 이영호 · 신국환 · 윤건영 · 김영숙 · 이시중 의원 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

(10월29일 김재홍 · 강혜숙 · 김원웅 · 김태년 · 김영춘 · 박홍수 · 노현송 · 안민석 · 최규성 · 원혜영 · 백원우 · 이광철 · 김재윤 · 이목희 · 이인영 · 장영달 · 이경숙 · 양형일 · 현애자 · 천영세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6월3일 정부 제출)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6월18일 이윤성 · 이해봉 · 이경재 · 황우여 · 박성범 · 박계동 · 심재철 · 엄호성 · 권영세 · 류근찬 · 박세환 · 문병호 의원 발의)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9월9일 우상호 · 이철우 · 김재홍 · 한병도 · 이광철 · 오영식 · 정청래 · 김재윤 · 백원우 · 안민석 · 원혜영 · 이인영 · 복기왕 · 임채정 · 김희선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정종복 의원 대표발의)

(8월26일 정종복 · 이상득 · 김재원 · 허태열 · 김석준 · 김태환 · 이상배 · 이인기 · 김기현 · 허천 · 고경화 · 이강두 · 이철우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

(11월3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

(11월15일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社會保障基本法中改正法律案

(11월3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6월14일 장향숙 · 문학진 · 김태홍 · 서병수 · 윤호중 · 최규식 · 장복심 · 이상열 · 박상돈 · 정화원 · 김영춘 · 강혜숙 · 이미경 · 김원웅 의원 발의)

藥事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7월20일 안명옥 · 안홍준 · 박찬숙 · 이재오 · 고흥길 · 심재엽 · 이균현 · 정두언 · 주호영 · 고경화 · 김영숙 · 진수희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

(8월23일 박성범 의원 외 26인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보건복지부장래인사업의지방이양유보건의안

(9월15일 정화원 · 고경화 · 권철현 · 김문수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숙 · 김재홍 · 김충환 · 김태년 · 김학송 · 김희정 · 나경원 · 맹형규 · 박계동 · 박승환 · 박형준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서재관 · 송영선 · 심재엽 · 안경률 ·

안명옥 · 안상수 · 안택수 · 엄호성 · 우제창 · 윤건영 · 이강두 · 이계경 · 이계진 · 이균현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권 · 이원영 · 이재오 · 이주호 · 임태희 · 장향숙 · 전여옥 · 정두언 · 정성호 · 정의화 · 최재성 · 한광원 · 한병도 · 허천 · 현애자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6월10일 안명옥 · 이해훈 · 심재철 · 고경화 · 윤건영 · 송영선 · 김영숙 · 유정복 · 김애실 · 정두언 · 이균현 · 공성진 · 진수희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6월11일 김영춘 · 장향숙 · 노웅래 · 안병엽 · 김낙순 · 김원웅 · 김석준 · 김태홍 · 정문현 · 김태환 · 전여옥 · 안영근 · 정성호 · 문학진 · 김형주 · 김용갑 · 임종석 · 권영세 · 정의용 · 정청래 · 장복심 · 박계동 · 진수희 · 권철현 · 안상수 · 원혜영 · 윤호중 · 박상돈 · 정화원 · 강창일 · 김한길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6월19일 장복심 · 신기남 · 임채정 · 김우남 · 김희선 · 유재건 · 김혁규 · 박명광 · 노웅래 · 김형주 · 신중식 · 이경숙 · 이강래 · 조정태 · 박홍수 · 오영식 · 최규식 · 최성 · 염동연 · 김낙순 · 정성호 · 김기석 · 안병엽 · 이영호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안택수 의원 발의)
(6월25일 안택수 의원 외 24인 발의)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정화원 의원 발의)
(8월18일 정화원 의원 외 26인 발의)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11월12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11월8일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貨物流通促進法中改正法律案
(10월6일 정부 제출)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11월9일 정부 제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김동

철 의원 대표발의)
(11월19일 김동철 · 양형일 · 정장선 · 김태홍 · 강기정 · 이종걸 · 노영민 · 박상돈 · 김맹곤 · 이상경 · 우제항 · 김기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현애자 의원 발의)
(7월19일 현애자 의원 외 16인 발의)

대중교통육성법안
(10월19일 정부 제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
(11월9일 정부 제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
(11월23일 안택수 · 김기석 · 김동철 · 박혁규 · 김병호 · 김태환 · 안홍준 · 이윤성 · 허태열 · 정갑윤 · 한선교 · 허천 · 최인기 · 이낙연 · 강재섭 · 안상수 · 오시덕 · 이인기 · 황우여 · 유승민 · 권영세 · 서병수 · 이계진 · 엄호성 · 주승용 · 이재오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請願提出

가산사영정각순국충혼위령탑건립에관한청원
(2004년12월10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 543번지 정풍열로부터 김재운 의원의 소개로 제출)

독도의날제정에관한청원
(2004년12월10일 서울 종로구 계동 133-6 독도수호대 사무국장 김점구로부터 김원웅 · 정병국 · 강창일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2월1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이호균으로부터 이계안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1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김민수교수재임용탈락시불법행위에관한청원
(2004년12월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33번지 주공아파트 130-204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조문기 외 36인으로부터 최순영 의원 외 9인의 소개로 제출)

12월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패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2월1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박상중으로부터
이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請願審査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

(2004년8월18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78-3 서산수협 조합장 김성진 외 10인으로
부터 문석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여성전문금융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0월6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중
으로부터 엄호성·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
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2건 12월24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7월14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13-18
이재윤 외 11인으로부터 전재희 의원의 소개
로 제출)

파생상품과세를위한소득세법개정안폐기에관한청원

(2004년11월5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840번지
부산선물도시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조성렬 외
4인으로부터 엄호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중
으로부터 이은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
출)

세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6일 서울 마포구 청암동 168-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으로부터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4건 12월29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報告書

2004년도산림과임업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12월23일 정부 제출)

2004년도농정에관한연차보고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대응한2004년도농림수산
업구조조정사업시행내용보고서**

(이상 2건 12월27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書面質問書提出

KBS수신료에관한질문서(2건)

(이상 2건 12월13일 박재완 의원 제출)

국립원주대학의대학교승격에관한질문서

(12월14일 이계진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提出

용산미군기지이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2월8일 정부 제출)

고도제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2월13일 정부 제출)

**고유가에대한정부대책및향후에너지정책방향에관한
질문서에대한답변서**

(12월20일 정부 제출)

KBS수신료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2월24일 정부 제출)

**국립원주대학의대학교승격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
서**

(12월27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